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1994. 12

金 瑩 允(政策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후

아

본 연구는 통일의 미래상 제시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는 경제적 자유, 분배적 평등 및 복지경제체제의 기본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사회적 시장경제'와 '협적 주의적 시장경제'를 그 이념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1. 경제체제란 주어진 지리적 영역안에서 生産, 所得 및 消費와 관련되는 의사결정과 이의 수행을 위해 마련된 機構(mechanisms)와 制度(institutions)의 集合體이다.

경제체제를 유형화하는 일반적 기준은 ① 生産的 資産, 즉 生産手段에 대한 권리의 所有形態, ② 경제활동의 相互依存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mechanism), ③ 그 目的과 性向 및 역할이 각각 다른 무수한 경제단위가 경제활동을 위해 결정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구조, ④ 의사결정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사회의 정보구조(informational structure), ⑤ 인간을 움직이게 자극하는 요소로서 경제적 活動意慾의 원천이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발전과 變化의 원동력인 動機(motivation) 등이다.

어느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그 경제체제가 이루어내는 成果는 어떤 형태의 사회든 직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해결

하여야 할 경제적 문제는 첫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선택의 效率性問題 둘째, 생산된 재화를 어떤 원칙에 따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느냐 하는 平等性問題 셋째, 그 사회가 과거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원을 어떻게 유지·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경제적 豊饒와 成長性問題 넷째, 위의 경제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적 개념으로서 모든 경제활동이 급격한 변동과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경제활동의 환경을 마련하는 安定性問題이다.

2. 남한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自由市場經濟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국가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調和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북한은 시장기구의 메카니즘과 生産財의 사적 소유를 부인하고 국가에 의한 계획기구의 운용과 생산수단의 國家所有制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의 이념적 기초는 인간을 無政府性과 無計劃的인 시장질서, 즉 시장의 맹목적 自然法에 맡기는 것이 非人間的이라는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주의의 이념적 기초는 큰 사회 혹은 열린사회의 구성원리와 발전원리에 대한 理解不足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적 이념은 작은 사회, 가족이나 공동체의 조직 및 발전원리인 사랑, 협동, 공유의 원리를 큰 사회와 국가에 확대하여 실천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도는 처음부터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는 경제전반에 걸쳐 구조적 부족현상을 초래하는 비효율성에서 그 한계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이념적 기초인 私有財産制度는 사회의 부와 소득 및 권력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意思決定構造를 多樣化하고 分散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밖에도 生産資源을 증대하고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강력한 動機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財産權 행사와 관련하여 심리적인 安定感을 부여하고 있다.

3. 남북한간 경제체제의 統合은 경제활동의 機能的 측면이 단일화됨을 의미하는 바, 經濟水準이나 기술수준 등 경제의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경우, 경제통합을 위한 政治的인 합의가 무리없이 도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제체제 통합은 상호간의 경제수준이 平準化를 이루고, 정치적인 결정이 이를 뒷받침할 경우에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남북한간의 體制統合이 平和的으로,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秩序가 지배하는 福祉國家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 체제로 전환될 때 만이 가능하다. 북한의 남

한체제로의 전환은 북한 주민의 정치·사회의식과 민주화 의식이 높아져야 비로소 가능하다. 民主化意識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4. 統一韓國 經濟體制의 基本價値는 경제적 自由, 分배적 平等, 福祉經濟體制의 구축에 두고 있다.

경제적 자유란 財貨나 用役의 수요 또는 공급자인 개별 경제주체의 '효율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사회적 障礙物(Social Barrier)이 없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私的所有와 경제적 배분결정의 市場經濟秩序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은 恣意的이고 裁量的 개입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틀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개입, 편의에 의한 개입이 아니라 原則에 의한 개입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分配的 平等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道德的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存在라는 기본적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누구나 다 本質的으로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물질적 가치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社會 價値規範은 그와 같은 도덕적 가치만을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물질적 가치의 創出過程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競爭市場 체제하에서 결정된 가격은 公正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쟁시장의 정당한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한 소득은 個人的 當연한 權利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분배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라고 할 수도 있다.

복지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衣食住가 풍족하고(경제적 복지),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정신적 복지) 사회, 즉 사회복지가 실현된 福祉社會 내지 福祉國家의 상태를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의미는 사회복지를 구체화함으로써 나타나는 데, 社會福祉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으로서 개인과 집단의 삶과 건강이 만족스러운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들의 조직적 체계에서 구할 수 있다.

5. 統一韓國이 추구하는 經濟體制의 이념적 기반은 “社會的 市場經濟”와 “協議主義的 市場經濟”에 두고 있다. 經濟的 自由와 平等 面에서는 “社會的 市場經濟”를 經濟發展을 위한 정부의 역할 면에서는 “協議主義的 市場經濟”와 부합하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責任을 진 市場經濟(sozial verantwortet Marktwirtschaft)로서 시장경제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강조함과 동시에 단순한 自由放任主義의 시장경제와는 구분된다.

여기에는 첫째, 완전경쟁에 따른 재화와 용역시장에서의 가격체계 구축 둘째, 안정적인 通貨政策을 통한 화폐가치 안정

셋째, 모든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市場進入과 離脫 보장 넷째, 생산수단에 대한 私的所有과 경제활동에 있어 계약의 자유 보장 다섯째, 경제정책의 一貫性 원칙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경쟁시장에서의 有效價格 形成을 가능케 하는 反獨占 정책을 실시하고 완전고용,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 경제정책적 제목표 달성과 교육조직이나 건강제도 정비, 사회적 不均衡 시정 및 산업부문적 지역적인 구조조정정책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노사간의 공동결정에 따른 경제의 民主化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협약주의적 시장경제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큰 틀내에서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여 형성된 市場經濟 秩序類型이다. 자본주의와 인본주의 논리가 調和됨으로써 높은 시장순응적 자원배분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제질서이다.

협약주의적 시장경제는 미시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의 競爭原理를, 巨視的 경제 측면에서는 시장원리보다는 정부의 행정 지도, 은행과 기업의 복합체제, 協助와 競爭의 조화, 기업계 열화, 업체 및 단체의 自律的인 활동, 협조적 하청제도와 노사관계 등의 組織原理를 택하고 있다.

6. 통일한국의 經濟政策은 다음과 같은 基本方向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市場과 政府와의 조화를 이룩한다. 이는 시장과 정부의 시장기능에 대한 調整的 역할을 의미하는 바,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需要·供給이 시장을 통해 균형을 이

룸으로써 자원의 最適配分을 이루게 하며, 소비자와 기업은 시장에서 성립된 생산물과 生産要素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최적의 행동, 즉 소비구조와 생산방법을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둘째, 勞使間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노사관계는 分配面에서의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계급적 대립의 발생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국영기업에 있어서는 노동자 경영이 실현되고, 사기업에서는 노동자의 經營參與가 촉진되어야 한다. 셋째, 産業發展과 分配와의 조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즉 경제발전과 함께 소득 재분배를 포괄적이고 강력한 社會保障의 실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民族經濟와 世界經濟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산업구조의 二重性을 청산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의존성을 탈피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7. 통일후 남북한이 單一 경제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체제전환이 필수적이다.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은 북한 경제를 이루는 제도적인 기구의 전환을 지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法的·制度的 장치가 도입·시행됨을 의미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資本主義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체제간 통합이 정치적인 면에서 가시화된 후, 경제 전반의 自由化를 꾀하고 일정기간 동안 북한 경제체제가 市場經濟體制로서의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 경

제지역의 單一化를 이루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경제체제 전환시 정책적 고려 사항은 첫째, 북한 경제체제를 충격적인 방법을 통하여 빠른 시간내에 市場經濟體制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北韓地域에 경제행위와 관련된 법의 지배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북한 주민의 사고 속에 經濟意識에 대한 改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한에서는 첫째, 북한경제 체제전환을 위해 올바른 改革理論과 개혁철학을 가져야 한다. 둘째, 남북한 경제체제 통합에는 費用과 犧牲이 따른다는 것을 남북한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를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셋째, 체제전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企業人이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대량양성해 내어야 한다. 넷째, 官僚主義 병폐를 대폭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체제전환이 기업의 집중현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달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南韓 經濟가 안고있는 問題點부터 해결·개선해, 남한경제를 統一韓國의 경제체제에 접근시키는 일부터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方法	3
3. 研究內容 및 構成	4
第 II 章 經濟體制의 理論的 背景	6
1. 經濟體制 概念	6
2. 經濟體制 類型決定要素 및 類型	10
가. 經濟體制 類型決定要素	10
나. 經濟體制 類型	21
3. 經濟體制 成果基準	24
가. 經濟的 效率性	27
나. 分配의 平等性	31
다. 經濟的 豊饒와 成長性	34
라. 經濟的 安定	36
第 III 章 南北韓 經濟體制의 基本性格과 體制 統合方向	39
1. 南北韓 經濟體制의 基本性格	39
가. 南 韓	39
나. 北 韓	50
2. 南北韓 經濟體制 統合方向	61
가. 南北韓 單一經濟體制 選擇基準	61

나. 南北韓 經濟體制의 市場經濟體制로의 收斂可能性	74
다. 南北韓 經濟體制 統合過程과 方向	81
第 IV 章 統一韓國 經濟體制	86
1. 基本價値와 目標	86
가. 經濟的 自由	87
나. 分配的 平等	96
다. 福祉經濟體制 構築	108
2. 理念的 基盤	114
가. 社會的 市場經濟	115
나. 協議主義的 市場經濟	130
第 V 章 統一韓國 經濟體制 形成 課題	136
1. 統一韓國 經濟體制의 政策的 基本方向 設定	136
2. 北韓 經濟體制 轉換	142
가. 經濟體制轉換 對象과 內容	143
나. 經濟體制轉換 方法	145
3. 南北韓 經濟體制 單一化	150
가. 北韓地域 政策的 課題	150
나. 南韓政府의 政策的 課題	156
第 VI 章 結 論	161
參考文獻	167

第 I 章 序 論

1. 研究目的

市場經濟는 하나의 경제질서원리의 표현이지만,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체제가 발전한 하나의 구체적 역사현상이다. 따라서 資本主義는 시장경제질서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시대나 국가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영국의 자본주의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미국, 독일, 일본의 자본주의는 그 질적인 면에서 서로 크게 다르다. 같은 독일, 일본의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戰前과 戰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미국의 市場經濟原理와 일본의 시장경제원리는 서로 유사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秩序原理 혹은 秩序原則으로서의 시장경제와 역사적 현상으로 나타난 자본주의를 구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¹⁾

즉 시장원리를 지지하면서도 資本主義의 문제에 대해 비판할 수 있으며, 反資本主義的 입장을 견지하면서 反社會主義的인 자세를 견지할 수도 있다. 또한 親市場主義的인 입장에서도 反資本主義的이며 反社會主義的인 입장을 개진할 수 있을

1) 예를 들어 독점의 경우만 하더라도 獨占이 市場經濟의 결과로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정부의 認·許可, 特惠 등 시장원리의 不在 또는 정치원리의 過剩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인 모순(예: 獨占, 貧益貧富益富, 失業이나 景氣變動 등)을 시장경제원리(경쟁적 시장)가 견지하고 있는 모순으로 취급하여 反資本主義의 입장이 완전히 反市場經濟主義로 認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통일방안에는 통일후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체제가 어느 체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남북한 전체의 「共存共榮」과 「民族福利」가 구현되는 사회체제로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²⁾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의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국가의 체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形象化하는 데 있다. 물론 통일후 남북한 양체제 중 어느 체제가 민족의 繁榮과 福祉를 더 크게 보장할 수 있는지는 확연하나, 그것이 비록 남한의 自由民主主義 體制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더라도 민족의 복지를 위해서는 자체수정과 긍정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후 바람직한 경제체제상을 수립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서 통일한국의 경제체제가 어떤 형태를 견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한가지 언급할 사항은 남북한이 현실적으로 처해있는 분단 상황의 可變性과 거기서 비롯되는 예측의 不確實性으로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에 대한 사실의 論證보다는 통

2)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담고 있는 이론적인 배경과 그 실천방향에 대한 연구는 1994년말 비로소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民族統一研究院, 「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의 理論體系와 實踐方向」(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참조.

일한국의 經濟體制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當爲性的 論證이
 앞설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2. 研究方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질서를 규정하는 概念과
 역사상 형성된 개념을 달리하여 經濟體制를 논의하고자 한다.
 즉 市場經濟를 경제질서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한편,
 資本主義를 역사상 형성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형성을 위한 체제단일화의 課題
 를 體制展開論的 觀點³⁾인 體制移行論이나 體制收斂論에 기초
 하여 파악하지 않고 남북한 비교경제체제론적 입장에서 접근
 하고자 한다.

셋째, 統一韓國 경제체제를 최우선적으로 결정하는 經濟體

3) 體制展開論的 接近은 마르크스(K. Marx)와 슈페터(J. A. Schumpeter)
 와 같은 자본주의 소멸과 사회주의로의 移行論, 양체제의 특징중의 일부
 가 유사한 변화를 하고 있다는 사무엘슨(P. Samuelson)식 接近論, 양
 체제의 평행 변화를 의미하는 미세스(L. von Mises)나 하이에크(F.
 A. Hayek) 등의 對立論, 양체제가 새로운 하나의 체제에 收斂하게 된다는
 갈브레이스(J. K. Galbraith)를 비롯한 미르달(G. Myrdal) 및 틴버
 겐(J. Tinbergen)의 收斂論 등 다양한 이론적 관찰에서 찾아볼 수 있으
 나 자세한 언급은 省略한다. 다만 남북한 경제체제가 收斂論的 立場에서
 통합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본 연구 제3장 제3절에서 간단히 언급하
 고자 한다.

制理念⁴⁾은 통일한국의 政治理念的 價値⁵⁾인 自由·平等·福祉에 기초하여 形象化한다. 즉 먼저 경제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넷째, 경제체제를 규정하는 기본적 변수로는 生産手段의 所有方式과 經濟의 調整方式, 즉 資源配分方式의 두가지를 채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⁶⁾

3. 研究內容 및 構成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第1章의 序論에 이어 第2章에서는 經濟體制의 일반론적 측면을 고찰한다. 第3章에서는 남북한 경제체제와 양체제의 통합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는 통일후 경제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第4章과 第5章에서는 통일한국의 經濟體制를 구체적으로 형상

4) 여기에서 이념은 “사회적 집단이 공감하는 사상(ideas)의 체계이며, 이 사상은 사회현실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사회가 보존하거나 증진하여야 할 바람직한 가치와 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G. Grossman, *Economic Systems*,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4), p. 36.

5)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 병행하여 추진한 ‘統一韓國의 政治理念’을 참조할 것. 黃炳惠, 「統一韓國의 政治理念」(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참조.

6) 이와 같은 요소들을 탈하임(K. C. Thalheim)은 체제규정변수(systemabh ngige Variablen)라고 부르고 있다. K. C. Thalheim, “Systemtypische Merkmale von Wirtschaftsordnungen,” in H. Arndt, *Sozialwissenschaftliche Unetrsuchungen* (Berlin, 1969), p. 332 참조.

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여기에서는 경제체제가 일반적으로 지향해야 할 理念과 目標를 먼저 설정하고, 이를 形象化하기 위한 이념적 基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본 후, 統一韓國의 經濟政策과 經濟體制 형성을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第6章은 본 연구의 중심적 사고를 集約하여 결론으로 대치한다.

第 II 章 經濟體制的 理論的 背景

1. 經濟體制 概念

경제체제(Wirtschaftssystem)는 그것이 지니는 多義的 성격으로 인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¹⁾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경제체제란 “주어진 지리적 영역안에서 生産, 所得 및 消費와 관련되는 의사결정과 이의 수행을 위해 마련된 機構(mechanisms)와 制度(institutions)의 集合體”²⁾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경제행위와 그 결과에 直·間接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法規, 傳統, 信念, 態度, 價値 및 그 결과로 발생하는 行動上의 形態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³⁾

機構란 체제 구성원간(개인과 집단)의 규칙적인 相互作用(interaction) 또는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으로 연합된 理想(idea)이나 活動(activity)이 機能할 수 있는 명령(order)이나 규칙(rule)의 集合體이다. 반면, 제도란 規範(norm), 行爲規則(rule of conduct)이나 思考方式(way of

1) Frederick Pryor, *Property and Industrial Organization in Communist and Capitalist Nation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p. 337.

2) Assar Lindbeck,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Left: An Outsider's View*, 2nd ed. (New York: Harper and Row, 1977), p. 214; Betriebswirtschaftlicher Verlag Dr. Th. Gabler, *Gablers Wirtschaftslexikon* (wiesbaden: 1980) 참조.

3) Betriebswirtschaftlicher Verlag Dr. Th. Gabler, *Ibid.*, p. 2263.

thinking)이 체계를 이룬 것으로 어느 사회나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tool) 내지 방편(mean)이다.⁴⁾ 예를 들어 經濟制度란 개인 및 사회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하는 規範 및 行爲規則으로서 한 사회의 경제를 특징지우고 있다.⁵⁾

경제체제는 정치체제와 법률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市場經濟 기능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居住移轉의 자유, 營業의 자유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자유없이는 分業도 特化도 交換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개인의 자유는 자산의 私的自治(private autonomy)에 대한 인정 즉, 私有制(private ownership)가 전제될 때 성립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정치적 다원주의(political pluralism)에서 기능할 수 있다. 다시말해 시장경제·사유제·정치적 다원주의는 상호 규정적,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한다.

이에 반해 명령경제에서는 集團主義를 개인주의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집단의 利害보다 우선시킬 경우, 경제체제 자체가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초인 사유제를 인정하지 않고

4) Walter S. Buckingham, Jr., *Theoretical Economic System: A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58), p. 90.

5) 경제제도는 사회가치, 규범 또는 권력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끊임없이 生成, 消滅, 改替, 變形되고 있다.

관료적인 명령과 지시의 법률적 기초인 국유제를 채택하고 있다. 개인보다 集團主義(collectivism)를 앞세우기 때문에 정치질서도 이에 상응하는 一元主義(political monism), 즉 중앙집권적 一黨制가 등장한다. 다시말해 命令經濟·國有制·一元主義가 상호 규정하는 의존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경제체제는 모든 경제사회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적 과제, 즉 무엇을, 어떻게 生産하고, 생산된 財貨와 用役을 어떻게 개인과 집단,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위하여 配分하며, 외부사회와 어떤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가 하는 것을 해결해 가는 경제제도의 總體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는 지역 및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어떠한 방법에 의존하든 한 사회가 존재하는 限, 수행되고 있으며 時代的·歷史的 狀況에 따라 變化·發展하고 있다.⁶⁾

6) 한 사회가 견지하고 있는 경제체제는 인간의 思考, 慣習, 傳統, 經濟行動을 규정하고 있는 命令과 法規 등이 시간을 통하여 形成, 改造, 修正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로스만(G. Grossman)은 이를 크게 理想的인 면과 權力的인 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념은 현실에 대한 판단에 입각하며 사회·경제제도의 적응을 요구하게 하나, 권력(power)은 타인의 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方向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生産的 資產(productive assets)의 소유 및 영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자산은 補償的 권력(remunerative power)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G. Grossman, *Economic Systems*, 김희욱 역, 「비교경제체제론」(서울: 서문당, 1987), pp. 51ff.

경제체제가 기능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는 사회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소득과 부의 형태로 재분배하는 調整(adjustment)과 경제적 諸問題에 대한 제도적 適應(adaptation)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한다.

조정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特定人の 意圖的 決定(conscious decision)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대부분 시장기능에 의해 자동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앙계획의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人爲的 調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限界를 벗어날 경우, 體制 性格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는 정치적 상황변화에 의한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경제체제 전환, 국유화와 사회보장이 강력히 실시되는 방향으로의 경제제도가 전환된 바 있는 북유럽제국의 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반해 '適應'은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의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각 경제주체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적인 제도나 법규의 신설 등은 국가적인 결정에 의해 經濟環境에 부합하는 企業 創設이나 合併, 勞動組合의 결성 등 각 경제단위가 그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創意와 自發的 行動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2. 經濟體制 類型決定要素 및 類型

개별 經濟社會는 서로 상이하거나 유사한 體系와 組織으로 각자 나름의 경제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類型化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의 소재에 따른 資本主義, 社會主義 등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 그 외의 경제체제에 대한 기술적 特性과 관련된 분류는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여기에서는 경제체제의 유형의 決定 基準을 다음의 몇가지 요소로 나누어 구분하고, 체제유형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가. 經濟體制 類型決定要素

(1) 財產所有制度

경제체제를 유형화하는 데 있어 가장 특징적 요소는 財產權(property right)의 所有形態다. 재산권이란 生産的 資產, 즉 生産手段에 대한 권리를 指稱하며, 그 종류에는 有形·無形 資產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① 재산이 되는 대상물의 처분, 즉 所有權을 타인에게 移轉시킬 수 있는 권리, ② 재산 대상물의 사용, 다시 말해 所有財產을 임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및 ③ 재산 대상물이 발생시킨 생산물이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재산권의 소유형태는 일반적으로 私的(private), 公的(public) 및 集團的(collective)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는 재산권이 각각 민간, 국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경제체제하에서도 재산권이 완전히 사적이거나 공적 또는 집단적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며 이의 세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경제체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모든 物的 生産手段은 사회전체의 財産으로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자본주의 체제하의 生産手段은 그 사회 구성원인 각 개인의 私有財産(private property)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재산을 일정한 법질서 내에서 마음대로 활용하고 처분할 수 있으며, 사유재산에 대한 相續權까지 인정하고 있어 재산권의 永續性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所得分配은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生産手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분배에 대한 公正性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어느 특정 사회가 견지하고 있는 재산소유형태에 따라 그 사회 구성인의 경제활동 목적 및 動機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⁷⁾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는 경제활동에 대한 動機賦與나 效率性보다는 분배의 公正性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

7) 개인소유의 資本이 지배적인 사회의 경우, 자본은 投資機會의 商業的 收益率(commercial rates of return)에 따라 배분되는 반면, 國家所有 자본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국가가 인식하는 社會的 收益率(social rates of return)에 의거하여 자본이 배분된다. 재산활동의 결과를 배분하는 형태가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기구, 조직 및 동기와 방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반면, 사유재산제도의 자본주의체제는 經濟活動에 참여하는 각 개인의 동기유발을 더 강조하고 있는 편이다.

(2) 經濟調整機構

어느 사회든 그 사회의 경제는 무수히 많은 經濟單位가 다 른 많은 經濟單位와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지며 이루어지고 있다. 그와 같은 경제활동의 相互依存的 관계에서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이용, 분배 등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파생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이해관계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mechanism)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이를 조정하는 기구에는 전통, 시장 및 계획 등이 있는데, 한 사회의 지배적인 경제조정기구(economic coordinating mechanism)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사회를 傳統經濟(traditional economy), 市場經濟(market economy) 또는 計劃經濟(planned economy)로 나눌 수 있다.

전통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慣習을 의미하며 歷史적으로 가장 오래된 조정기구다. 직업의 세습이나 물물교환 등 경제가 발달하기 이전 사회의 資源配分, 생산방법, 분배 등은 傳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전통에 의해 사회규범과 질차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문제의 대부분을 전통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경제사회의 활동과 價値가 변동이 없는 폐쇄적인 사회에서만 가능할 뿐이며 기술혁신과 개방적인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통적 가치관은 사회적

경쟁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도태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시장기구에 의한 조정은 價格機構 또는 시장원리에 의해 생산자원이 投入되고 생산물이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경제단위의 의사결정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기구가 機能하는 곳에서는 ① 개개의 경제단위가 스스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② 이의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代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③ 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⁸⁾

계획은 시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경제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원배분에 대한 意思決定을 유도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사실상 상위기관으로부터 하위기관에 내려지는 命令이 경제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命令이란 사회의 경제단위를 조정하고 경제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당국이 집단적 가치와 목적구조에 準하여 행하는 의도적 결정을 말한다. 즉 命令원리(command principle)가 가격을 대신해 각 경제단위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다.

命令원리가 기능하는 곳에서는 ① 개별경제단위의 의사결

8) G. Grossman, *Economic Systems*, 김희욱 역, 「비교경제체제론」(서울: 서문당, 1987), p. 37.

정이 독립적이거나 자주적이지 못하며, ② 경제단위를 조정하고 자을 배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③ 경제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情報가 位階秩序的 組織(hierarchical structure)을 통해 전달된다.⁹⁾

(3) 意思決定構造

경제는 그 目的과 性向 및 역할이 각각 다른 무수한 경제단위와 이들 경제단위가 경제활동을 위해 결정하는 의사가 반영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활동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개별 경제단위를 권위수준별로 나눌 경우,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 실무당국(intermediate levels), 기업, 가게 등과 같은 단위로 나타낼 수 있다. 각 경제단위의 의사결정은 정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구조는 사회의 정보구조(informational structure)와 직접적인 聯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형태(분산과 집중정도)에 따

9) 위의 책, p. 38;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도 국가경제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행정당국이 국가가 지향하는 거시적 또는 부문별 목표와 정책방향을 개별경제단위에게 제시하고,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공급하며, 간접적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개별경제단위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계획은 지시적 계획(indicative plan)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의 계획과는 내용면에서 크게 다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강제적 계획(imperative plan)이 적용되고 있다. 중앙계획자의 경제계획에 의하여 각 생산단위에게 생산목표를 지령하고, 이의 수행을 의무화함으로써 경제를 조정하고 있다.

라 나누어 보면 크게 完全集中(complete centralization),¹⁰⁾ 管理的 分散(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調節的 分散(manipulative decentralization) 및 完全分散(complete decentralization)¹¹⁾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²⁾ 그러나 의사결정이 완전집중되거나 완전분산되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경제체제든 관리적 분산이나 조절적 분산의 의사결정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리적 분산은 기본적인 결정이 중앙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세부적인 결정은 보다 낮은 단계의 권위수준에 맞추어 아래로 이양된다. 이 경우 하부조직의 권위수준이나 결정범위는 명령이나 결정권행사에 대한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통제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조절적 분산은 의사결정 행위에 대한 자유를 관리적 분산과 같은 정도로 명백하게 제한하지 않는 의사결정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구조는 의사결정의 상대적 집중도에 따

-
- 10) 완전집중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절대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당국이 내리는 경제체제에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경제단위를 명령에 의거 정확히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보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11) 완전분산은 의사결정권이 다수의 독립적인 기본경제단위에 산재시킨 의사결정 형태이다. 의사결정의 完全分散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기업자유제 (free enterprise system)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정당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언제나 기업을 創設하거나 解散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12) Egon Neuberger,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in Alan A. Brown, et. al. ed., *Perspectives in 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1971), pp. 255~257.

라 집중적 체제(centralized system) 또는 분산적 체제(decentralized system)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기구가 기능하고 있는 경제의 의사결정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계획과 명령이 지배하는 경제에서의 의사결정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다.

(4) 情報構造

정보는 그 자체가 非體系的이고 불완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재구성되어 투입된다. 정보는 일정한 조직 내부에서 발생되거나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보의 移轉은 수평적 경로(horizontal channels)나 수직적 경로(vertical channel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가 수직적 경로를 통해 수집·전달되고, 이의 처리·활용이 최상부 권력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를 집중적 정보 체제(centralized information system)라고 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권자가 스스로 정보를 발생·소유·처리·활용함으로써 정보 전달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를 분산적 정보 체제(decentralized information system)라고 할 수 있다.

분산정보체제에서는 意思決定經路가 짧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¹³⁾이 증대된다. 그리고 개인의 경제활동이 자율적 의사결

13) 의사결정경로의 短縮은 정보취득 및 처리비용을 減少시키고, 情報歪曲의 위험을 극소화할 수 있으며 발생된 문제에 대해 보다 迅速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보다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自主性和 責任感이 高揚된다. 따라서 民主的 역량이 提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정보체제는 分散의 이익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動機誘發이 過當競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公益이 무시되고 外部非經濟(external diseconomies)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소지가 많다. 예를 들어 도로, 댐, 항만, 기타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의 구축이 분산적인 정보체계에 의해 추진될 경우, 그 생산이 오히려 萎縮되고 非體系化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시장의 실패).

뿐만 아니라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거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해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필요 資源 動員과 배분이 분산정보체계에 의한 시장기구에 의존되어 있을 경우, 능률적이고 신속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자부족, 가격양등, 소득분배 왜곡 등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많다. 그 밖에도 오염물의 배출, 무기류, 독극물, 마약 등의 생산과 거래 등은 분산된 意思決定 形態에 의존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집중적 정보구조체제는 公益을 私益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익에 우선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個人的 價値와 社會의 가치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경우, 公益을 위해 공공재 생산을 우선시 하는 의사

결정을 效率的으로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집중적 정보구조 체제에서는 체계적이며 완전한 정보가 투입됨으로써 보다 능률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정보를 취득하고 전달에 필요한 經路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비용의 과다에 따라 의사결정의 正確性, 정보전달 경로의 合理性 그리고 정보와 의사결정과의 連繫性 등이 영향을 받게된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分散的 情報體制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사회주의 명령경제에서는 集中的 情報체제를 유지하는 경향이 높다.

(5) 動機誘引

動機(motivation)는 인간을 움직이게 자극하는 요소로서 경제적 活動意慾(economic drive)의 원천이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발전과 變化의 원동력이다. 개인의 경제적 행동은 경제행위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goals)¹⁴⁾과 사회가 제공하는 誘引(incentives)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유인은 肯定的 유인(positive incentives)과 否定的 유인(negative incentives)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긍정적 유인은 다시 物質的 유인(material incentives)과 道德的 유인(moral incentives)으로 나눌 수

14) 개인이 취하는 경제행위의 목적은 그 자신의 가치실현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있다. 부정적 유인의 대표적 형태는 強制(coercion)이며 사회적 規範(social norms)도 이에 포함된다.¹⁵⁾

물질적 유인은 사회에 보다 나은 成果(performances)를 제공하는 자에게 그렇지 못한 자보다 큰 물질적 補償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이에 반해 도덕적 유인은 成果 제공자에 물질적 재화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사회에서의 위치를 格上시킴으로써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다.¹⁶⁾

물질적 유인은 개인이 利潤 형태로 시장에서 직접 얻거나, 報酬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도덕적 유인은 메달, 훈장 및 표창, 公認 등과 같은 상징적 徵表를 사용하여 개인의 동기를 유발한다. 도덕적 유인은 물질적 유인으로 보상효과가 크지 않는 영역에서 이용되거나 물질적 유인이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⁷⁾

15) G. Grossmann, 「비교경제체제론」, pp. 42~50.

16) 이 경우 보상은 개인을 지배하는 권력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사회는 여러 가지 성과와 보상 또는 기대되는 보상(expected reward)을 이용하여 구성원의 행위를 특정한 패턴(patterns)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이를 보상적 권력(remunerative power)이라고 한다. 보상적 권력에 대해서는 Amitai Etzioni,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s* (Glencoe: The Free Press, 1961) 참조.

17) 예를 들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이나 공직 또는 일부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소득을 증가시키는 물질적 보상보다 명예나 사회로부터의 인정이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물질적 보상체계가 능률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의 성과가 도덕적 유인에 의해 보상될 수 있으며 이의 획득이 오히려 물질적 수단획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부정적 유인으로서의 강제는 사회가 개인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강제의 수단으로는 세금이나 벌금의 징수, 강제노역, 체형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의 경제활동 動機는 不服從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는 데서 유발된다. 이 때 사회는 개인에 대해 強制的 權力(coercive power)을 행사하게 되고, 개인은 疏外的 參與(alienative involvement)로 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強制를 의사결정의 지배적 동기로 이용하는 사회에서는 강제적 유인으로 인한 無誠意한 참여를 극복하기 위하여 規範的 權力(normative power)을 행사하여 개인의 이기심으로부터 '共同의 善'을 창출해 내려고 하고 있다. 규범적 권력이란 대중의 教育 및 意識化, 宣傳, 象徵化 등을 통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질적 이익보다 높은 상위의 가치, 즉 집단적 가치에 同調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¹⁸⁾ 규범적 권력의 행사에는 權威主義的 통치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와 같은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인이 單一理念의 유일체제 가치관을 가지도록 教育되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異見을 금지하고 체제 이탈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사회구성원의 체제이탈 방지를 위해 査察과 監視活動을 강화한다.

한편, 규범적 권력이 행사되는 사회는 물질적 유인이 지배

18) 여기에는 흔히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 곧 '카리스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레닌, 모택동, 카스트로, 김일성 등 정치적 지도자 이외에도 많은 私的組織, 특히 宗教的 集團에서 이와 같은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사회와는 반대로 경제적 합리성 문제와 함께 효율성 문제가 크게 대두된다. 모든 상황이 흑백논리로 다루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다른 목표가 희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낭비, 비효율성 및 비합리성을 초래하기 쉬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크다.

나. 經濟體制 類型

경제체제는 위에서 언급한 경제체제 유형결정 요소를 얼마만큼 많이 포함하고 있는가에 따라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전형에 가까운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1> 經濟體制 類型決定 要素

區 分	0%		社會主義型 100%	
	100% 資本主義型		0%	
財產所有制度	사	유	공	유
經濟調整機構	시	장	계	획
意思決定機構	분	산	집	중
情報移轉機構	수 평 · 분 산		수 직 · 집 중	
動機誘引機構	긍정적 · 물질적		부정적 · 도덕적	

위에서 도식화한 경제체제는 경제체제를 유형화하는 요소를 2가지 이상 합치고, 그 요소가 가미되는 정도에 따라 예를 들어 '硬性', 또는 '軟性計劃型 資本主義'으로 불리어질 수 있으며, 경제체제 유형에 종교적 이념을 결부시켜 '基督敎的 資本

主義', '儒敎的 資本主義' 등 다양한 명칭의 체제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자본소유와 자원배분의 유형을 종합하여 본 경제체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經濟體制의 類型

		資源配分 類型	
		시 장	계 획
資本所有	민 간	시장자본주의	계획자본주의
	국 가	시장사회주의	계획사회주의

위의 체제유형 결정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¹⁹⁾은 일반적으로 生産手段이 私有化되어 있고, 생산이 주로 판매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經濟體制를 의미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利潤獲得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윤획득은 자유기업, 시장생산 등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동시에, 사회 및 인간 생활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밖에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企業家의 기업운영,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자유 勞動者의 존재, 자유로운 상품거래로 형성되는 가격기구의 조절적 작용에 의한 商品生産經濟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²⁰⁾

19) 각 체제의 개념 및 형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함.

20) 자본주의를 하나의 經濟體制로서 포괄적 규정을 시도한 사람은 쾰바르트

사회주의는 임의적으로 개념규정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① 생산수단이 사회적으로 소유되고 있으며,²¹⁾ ② 中央計劃이
 시장기구를 대체하거나, 이 기구와 공존하고 있고, ③ 경제계
 획은 국가의 계획당국에 의하여 黨이 설정한 국가사회적 목적
 을 달성하도록 수립·집행되며, ④ 所得分配의 균형이 중요한
 사회 목적으로 등장하는 체제이다.²²⁾ 또한 이윤동기에 의해
 영위되는 생산과 소비를 止揚하고 執權的인 중앙당국의 의식
 적 계획하에 생산과 소비를 직결 시킴으로써 경제적 調和를
 기하고 있다.²³⁾

(W. Sombart)이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란 生産手段 소유자와 무소유
 의 單純 勞動者가 시장에 의해 결합되어 협동하는 하나의 流通經濟組織
 이며 거기에는 營利主義와 경제적 合理主義가 지배한다고 보았다. 그는
 자본주의 본질을 첫째, 생산수단 소유자인 資本家와 무소유자인 勞動者
 의 사회적 분화현상과, 둘째, 생산수단 소유자인 私的 企業者가 자기의
 직접적인 需要充足을 위해서가 아니라 營利追求를 위해 경제적 합리주의
 에 바탕을 두어 생산하는 데서 찾고 있다. Werner Sombart, *Der mor-*
derne Kapitalismus, vol. 1, 2. Book, 20 Capital, p. 327, in Diehl, K.
 Mombert, P.(Ed.), *Ausgewaehlte Lesestuecke zum Studium der*
politischen Oekonomie, Kapital und Kapitalismus (Frankfurt-Ber
 lin-Wien 1979), pp. 161~176; 그 후 위의 첫번째 特質만을 가지고 資
 本主義를 분석한 사람은 마르크스 (K. Marx)였으며, 두번째 특질에 입
 각하여 근대자본주의의 본질적 概念을 구성했던 사람은 베버(Max We-
 ber)였다.

- 21) 자연자원과 토지 및 제조업, 금융업, 상업 및 대외교역 등의 부문에서
 자본이 거의 대부분 공유나 국가소유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 22) 소득의 배분은 근로의 양과 질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결정되고, 재산소득
 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개인 소비중 집단재의 비중이 높으며, 집
 단적 재화와 용역은 국가에 의한 공급체계를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된다.
- 23) 사회주의체제의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는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George Allen and Unwir Lid, 1972) 참조.

3. 經濟體制 成果基準

어느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그 경제체제가 이루어내는 成果는 체제 그 자체와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體制外的 要因(nonsystematic factors)에 의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어느 일정 방법을 통해 경제에 대한 體制 寄與度를 測定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O = f(S, E, P)$$

O: 한 체제에서 나타난 경제적 결과(economic outcomes)

S: 경제체제(economic system)

E: 환경적 요인(nonsystematic factors)

P: 경제정책(economic policy)

그러나 실제로 경제적 결과와 경제체제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일반화하거나 經濟體制와 經濟體制 外的 요인 및 경제정책의 상관관계를 數量化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마다 각각 다른 환경 및 정책요소를 모두 파악하여 적절하게 變數化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 獨立變數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相互 排除的 機能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내기도 어렵다.²⁴⁾ 이는 우선 경제적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24) 예를 들어 自給自足 및 폐쇄경제적 성향이 짙은 경제가 體制固有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 의도나 경제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變數化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체제가 기여한 경제적 성과를 추정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經濟的 成果에 대해 체제가 기여한 부분을 정확히 추정·비교하거나 어느 경제체제라도 추구하는 經濟的 安全이나 自由, 消費者 主權 등과 관련된 성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指標을 만든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경제체제 성과는 여러 가치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경제체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목표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체제에 대한 일련의 成果基準(performance criteria)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경제체제의 成果基準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사회든 -사회주의적 사회든, 자본주의적 사회든 상관없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經濟問題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기본적 경제문제는 어느 체제에나 부과되어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회 體制나 組織의 形態나

25) 체제가 성취한 成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가 추구하는 각각의 目標에 상대적 重要性을 고려한 가중치(weights)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하나의 指數로 나타낸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目的價値는 공통분모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논리적으로도 그 優劣을 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체제를 比較評價하는 데 있어 순수한 객관성을 견지하고, 일률적 판단을 통해 어떤 正確한 결과를 얻기란 불가능하다.

運用方法에 따라 각각 다르다.

기본적인 경제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갖는 경제목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포함하고 있다.²⁶⁾

첫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선택문제의 效率性(efficiency) 둘째, 생산된 재화를 어떤 원칙에 따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느냐 하는 平等性(equity) 셋째, 그 사회가 과거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원을 어떻게 유지·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경제적 豊饒(plenty)와 成長性(growth) 넷째, 위의 경제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적 개념으로서 모든 경제활동이 급격한 변동과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경제활동의 환경을 마련하는 安定性(stability)이다.

모든 형태의 경제체제가 위의 기본적인 경제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형태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경제체제의 성과는 이들 기본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네가지 經濟目標에 대한 성과기준을 ① 경제적 효율성, ② 분배의 공정성, ③ 경제의 성장성, ④ 경제

26) G. Grossman, 「비교경제체제론」, pp. 14~27; 그로스만은 이의 성과기준 이외에도 豊饒(plenty), 安全(security), 經濟的 自由(economic freedoms), 經濟的 主權 (economic sovereignty), 環境保護(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느 체제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의 4가지 기준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적 안정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그 밖에도 개인의 경제적 안전성(security)과 자유(economic freedoms)를 거론할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안전은 경제적 안정성과 연결시켜 논의하고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통일한국 경제체제의 실천적 목표에서 논의한다.

가. 經濟的 效率性

효율성은 체제내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성과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가 되며 경제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는 개념상 한 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勞動力, 生産手段, 知識 등의 생산요소를 낭비없이 활용하는 효과성(effectiveness)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은 제한된 자원의 용도 선택과 사용방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효율은 한 사회의 可用資源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모든 용도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情態的 效率(static efficiency)과 한 사회의 經濟成長을 고려하여 자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動態的 效率(dynamic efficiency) 및 특정용도를 위해 주어진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을 의미하는 技術的 效率(technical efficiency)로 대별될 수 있다.²⁷⁾

27) 情態的 效率과 動態的 效率은 제한된 자원으로부터 어떤 財貨와 用役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인 선택의 문제로서 한 사회의 바람직한 資源配分과 밀접한 聯關을 가지고 있다. 技術的 效率(technical efficiency)은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각 생산요소들을 어떻게 배합하여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장 效率的인가 하는 문제이다. 最善의

자원배분의 선택과 관련하여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이라는 개념을 이상적인 자원배분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개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자원배분의 가능성, 즉 자원의 最適配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된 재화의 가능한 여러 배합 중 사회구성원중의 어느 한 사람의 滿足度を 손상시키지 않고는 다른 어떤 사람의 만족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配合狀態가 되었을 때, 그 사회 전체 만족도가 極大化된 것으로 보고 있다.²⁸⁾

정태적 효율은 自由競爭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에서 더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중앙계획경제는 경쟁체제보다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앙계획 경제체제하에서는 의사결정이 집중된

투입물 배합을 선택하여 최선의 生産技術에 의해 최대생산량을 생산할 때,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할 수 있으나, 기술적 효율성이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資源配分의 效率性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성취된 상태에서는 技術的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資源配分의 효율성이 달성된 상태라는 것은 그 사회에 주어진 總資源을 완전 고용하여 最善의 기술로 생산가능한 최대의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수 있는 배합을 의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生産量配合이 사회구성원들의 전체적인 滿足度を 극대화하는 배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을 내포하는 包括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28) ‘파레토 最適性’의 개념 속에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득분배(혹은 효용수준)에 대한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의 기본적 문제 중에서 ‘자원배분’에 대한 효율성에 관한 개념으로 경쟁적 균형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형순, 「경제학원론」(서울: 박영사, 1980) 참조.

情報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개별 의사결정단위가 소유하고 있는 競爭體制에 비해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經濟的 均衡(equilibrium)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체제하에서는 가격기구가 자원을 최적배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계획 경제하에서의 가격은 단지 회계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도 가격기구를 대신하여 계획에 의한 완전계산(perfect computation)을 통해 자원의 最適 配分을 상상할 수 있으나, 이를 실현시키기는 불가능하다.²⁹⁾

- 29) 이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社會主義 체제에서는 중앙계획당국이 모든 제품의 需要와 供給이 균형되도록 生産과 消費를 결정해야 한다. 중앙계획당국은 우선 계획 기간 중 생산되어야 할 財貨와 用役의 종류와 수량을 국가적으로 주어진 목적하에 따라 설정한 후 土地, 勞動, 資本, 中間財 등 국가의 가용자원을 설정된 생산목표에 배분해야 한다. 각 기업의 생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는 그 기업의 목표량 산출에 필요한 각 投入要素의 양을 파악하여야 한다. 계획 담당자는 이 투입 요소의 計數를 과거의 계획경험으로 얻은 지식에 生産性的의 향상, 固定投資의 증대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생산규모, 기술, 생산기업에 따라 달라지는 技術計數를 이론적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산기업으로부터의 보고와 협의를 통하여 계획당국이 이 정보를 얻고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는 시간이 소비되고 정보가 歪曲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또한 현대와 같은 動的인 산업사회에서 모든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인위적으로 균형시키려는 계획은 실로 방대한 과업이다. 이를 위한 자료수집, 계산, 행정 등의 업무는 질적, 양적으로 변화하는 경제에서 가속적으로 增大된다. 이 계획을 이용하는 현실 체제에서는 물적 균형계획의 대상이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중앙계획당국은 단지 국가의 目的達成에 중요한 생산물에 한하여 이 계획을 세우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生産物에 대하여는 하위의 위계질서에서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아 비슷한 형태의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는 物的均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낙후부문에 남게 되는데, 대부분의 소비재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체제의 효율을 저해하는 ‘市場의 失敗’(market failure)요인이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다.³⁰⁾ 따라서 시장경제체제가 완전한 정태적 효율을 달성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중앙계획에 의한 의식적 결정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배분에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기술적 진보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이 생존을 위한 노력과 이윤 동기가 보다 새로운 生産方法의 도입을 촉진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보다 기술진보에 더 유리하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체제하에서는 단위생산기업의 규모가 혁신적 기술투자를 수용하기에 너무 작거나, 技術革新에 따르는 위험부담 때문에 기술혁신을 회피할 수도 있다.³¹⁾ 또한 경쟁적 자유시장 체제하에서 혁신된 기술은 다른 기업의

30) 시장실패는 첫째,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large scale)가 증대함으로써 독점이 형성되는 경우, 둘째, 도로, 교육, 방위 등 공공재(public goods)나 집단재(collective goods)의 가치가 시장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 셋째, 경제에 대한 기대의 불확실성과 불일치성, 불완전한 情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그 밖에도 자유기업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불확실하고 일치되지 않는 기대가 부문별로 과잉, 과소, 그리고 중복투자를 초래시킴으로써 浪費와 필요한 투자의 부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것은 의사결정단위의 정보가 비체계적이며 사후적(ex-post)으로만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31) 슈페터(J. A. Schumpeter)는 이에 대해 대규모 생산단위에서 기술진보는 자동화하고 기술혁신 자체가 축소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New York: Harper and Bros., 1942), p. 132.

방해를 받거나, 비밀유지, 특허권 등에 의해 그 전파와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逆說的으로 한 기업의 기술혁신은 다른 기업의 또 다른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나. 分配의 平等性

소득분배는 모든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反應하는 가치이며, 경제체제의 理想的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소득분배에 대한 이념적인 가치는 平等主義, 自由主義, 公利主義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平等主義는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가치관에 의한 분배인식으로 이와 같은 평등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경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급격한 생산성저하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다.

自由主義는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을 소유하게 하는 분배상태가 가장 정의로운 것으로서 개인의 권리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하고 있다. 즉 正當한 방법에 의해 所有하였다면 그 다과를 불문하고 正義로운 분배라는 주장이다.

公利主義에 의한 소득분배는 사회전체 厚生을 기준으로 하는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이 사회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바람직한 분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고전적 공리주의 이론에서는 분배에 따른 정의의

기준을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성원 등, 즉 개인이나 집단의 분배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분배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分配形態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公正分配(fair distribution)다. 이는 생산자가 생산 과정에 寄與한 정도에 따라 그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질서하에서의 공정분배는 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生産要素의 量, ② 要素市場의 需給關係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 ③ 生産物 시장에서의 가격, ④ 市場形態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소득차이는 생산자의 努力(절약 및 근검), 機會(투자 및 교육), 相續(물적 자본 및 인적 자본), 운 및 기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체제나 계획경제체제를 막론하고 공정한 분배기준에 의한 正當한 報酬構造가 구축될 때, 개별경제 주체의 能率과 生産性이 촉진되며 사회 전체적인 成長과 厚生도 도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정의 寄與度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과연 공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生産要素의 초과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低賃金과 失業問題가 발생한다. 또한 어느 사회나 生産過程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계층, 예를 들어 疾病者, 障礙者, 老齡者 및 靑少年層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들에 대한 配慮가 필요하다.

둘째, 均等分配(equal distribution)이다. 이는 생산과정에서의 기여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分配權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배 유형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분배받는 양보다 훨씬 큰 生産性을 가진 자가 자기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犧牲하여 남을 위한 생산에 임하기 어려우며, 生産性이 극히 낮은 자가 분배받는 권리의 일부라도 보답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均等分配는 사회 전체적인 성장을 阻害하고 사회적 豊饒를 縮小시킴으로써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

셋째, 機會均等(equity of opportunity)을 통한 分配의 平等이다. 이는 경제적 영역에서 모든 개인에게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同等한 機會를 附與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의 모든 集團과 階層에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차별을 없애고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과 成就動機가 각각 다르고, 사회의 補償構造가 개인의 성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機會均等이 반드시 均등분배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공정한 기회에 대해서도 확실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면에 있어서도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이 많다. 그 밖에도 公正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존재하는 不平等을 어떻게

없애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분배에 있어 어느 체제가 유리한가에 대한 대답은 먼저 어떤 종류의 분배적 가치에 보다 큰 비중을 두며, 그 분배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價値判斷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生産要素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되, 生産過程에의 寄與度에 따른 분배원리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생산요소의 보유상태로 인한 불공평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의 실천적 목표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 經濟的 豊饒와 成長性

물질적 豊饒(plenty)와 경제성장은 體制如何를 불문하고 모든 경제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기본목표이다. 자본주의에 있어 인간의 물질추구는 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인 '필요에 따른 분배'도 物質的 成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한 사회의 풍요는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財貨와 用役의 생산량인 國民總生産(GNP)의 규모로 측정된다. GNP의 규모가 반드시 사회의 풍요로움을 반영하거나, 이의 증가가 一國

의 厚生을 비례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나³²⁾ GNP의 절대 크기는 경제적 풍요를 가늠하는 잣대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은 어떤 기간 중 한 경제가 생산한 산출량(output)의 증가로서 경제적 풍요와 마찬가지로 1인당 GNP의 증가로 나타낼 수 있다.³³⁾

언급한 바와 같이 1인당 GNP의 증가가 반드시 厚生의 비례적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厚生增大는 성장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모든 경제가 추구하고 있는 고용기회의 增大와 近代化는 경제적 성장이 이루

32) 우선 GNP는 생산의 원천이 되는 餘暇時間이나 自然環境의 파괴와 같은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GNP에서 풍요로운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武器의 생산이나 私有財보다는 공공재(예: 관료기구 및 행정관청)의 생산, 소비재보다는 자본재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할 경우, 국민의 厚生水準을 향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풍요를 경제체제의 成果基準으로 채택할 경우, 통계적 수치가 지니는 여러 가지 制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밖에도 경제적 풍요가 經濟體制 外的 要因, 즉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즉 한 사회의 풍요는 그 사회의 歷史的·政治的·地理的·文化的·自然的 상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유사한 체제를 가진 국가간에도 풍요의 격차가 현저한 것은 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33) 經濟成長은 '일정기간중'의 GNP 증가율로 측정되기 때문에 어느 경제나 그 측정기간과 基準年度에 따라 成長率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정도와 반비례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고찰되고 있다. Hollis B. Cheney and Moises Syquin, *Patterns of Development, 1950~197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이에 대한 이유로 올손(Olson)은 사회 이해집단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이것이 경제성장을 가로 막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M. Olson,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어진 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경제성장이 분배구조를 歪曲시키고 環境破壞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경제성장 자체는 후생 증대를 실현시키는 구실을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라. 經濟的 安定

경제적 安定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經濟體制의 중요한 目標이자 成果다.

첫째, 經濟不安定은 경제주체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은 固定俸給者나 債權者의 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分配構造를 악화시킨다. 실업은 기능과 지식이 부족한 자의 소득과 人格을 상실시키고 불안을 야기해 개인적인 고통을 준다. 또한 실업상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개인이 가졌던 지식과 기능이 손실되는 非學習效果(unlearning effects)를 가져온다.³⁴⁾

둘째,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의 잠재적 생산이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경제가 生産可能水準 이하에서 운용될 수 밖에 없다.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潛在的으로 생산가능수준에 도달

34) 失業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실업으로 인정하는 통계적 기준이 경제체제나 각 국가별로 상이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실업은 보편적으로 非自發的 실업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過剩雇傭'(overemployment) 상태에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는 다섯명이 할 수 있는 과업에 열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과 같아 실제 개인의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 못한 경제는 勞動力과 設備의 낭비를 의미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모든 경제단위가 사전적 조정없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不安定은 시장경제체제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경제활동을 관장하는 의사결정이 총체적 계획입안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불안정의 가능성은 상당히 제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계획담당자의 判斷錯誤로 불안정이 초래될 수도 있으나, 이론적으로 그 가능성은 시장경제체제에서보다 현격하게 적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안정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주요 성과이지만, 시장경제체제에서도 경제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시장간섭이 정당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경제안정과 함께 체제의 성과로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安否이다. 개인의 경제적 안전이 중요한 경제체제의 成果가 되는 이유는 사회속에서 모든 개인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불행은 개인의 能力과 노력부족에 기인할 수 있으나, 개인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경제발전과 사회의 近代化는 모든 체제가 指向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개인의 불안전은 어느 체제에서나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경제적 안전은 개인의 직업과 소득을 위협하는 불가측적인 사회현상에 의해 지배되나, 인플레이션이나 경기급강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자를 발생시키거나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技術, 産業, 知識, 機能 등이 개발되는 현대화 과정속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사양산업과 도태업종이 발생하고 기업 도산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별경제 단위의 소득은 一時的 또는 永久的으로 없어지거나 감소된다. 또한 개인은 질병, 불구, 사고 등의 위험에 당면하고 있어서 개인과 가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개인의 안전은 소극적으로는 경제적 불안정을 제거함으로써 지켜질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는 '福祉國家'(welfare states)가 실현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데에는 체제가 견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가 중요하게 작용하나 體制類型이 필수적인 前提條件은 되지는 않는다. 개인의 경제적 안전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經濟體制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認識되고 있으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도 정부가 각종 社會保險과 사회복지서비스, 최소임금보장 등 복지정책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第Ⅲ章 南北韓 經濟體制의 基本性格과 體制 統合方向

1. 南北韓 經濟體制의 基本性格

가. 南 韓

(1) 經濟秩序 形成 및 變化過程

남한 경제체제는 資本主義的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경제에 대한 국가역할과 관련해서는 1948년 건국 이후 여러차례의 수정이 가해졌다.¹⁾

1948년 建國憲法은 경제독점을 억제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國有化와 社會化를 광범하게 규정하는 통제적 경제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당시 남한 경제에 封建 農耕經濟의 전통이 뿌리깊이 남아있고, 시장경제에 대한 無經驗과 빈곤의 平準化現象이 나타났기 때문에 국민생활의 조속한 향상과 부의 균등분배를 경제질서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던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고도의 統制經濟는 오히려 기업가의 창의적인 의욕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外資導入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정부는 1954년 11월 실시된 제2차 改憲에서 경제질서를 시민국가의

1) 권영성, 「憲法學 原論」(서울: 法文社, 1988) 참조.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 개헌 이후의 경제질서는 價格競爭과 市場機能을 自律에 맡기는 자유시장경제질서로서 존속 되어왔다.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효율적인 經濟發展과 法治主義의 실현 및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다시 경제에 대한 規制와 調整이 가능토록 하였다. 경제에 대한 국가 간섭은 1972년 제4공화국 헌법(維新憲法)에 의해 그 범위가 더욱 더 확대되었다. 경제 第一主義 또는 관주도형 경제로 불린 「유신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정부가 직접 경제에 개입하여 국가 정책적인 산업을 支援·保護·育成하는 경제시책을 펴는 등 모든 경제적인 變數를 정부가 調整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또 다시 경제조항에 대한 폭넓은 수정이 가해졌다. 그 수정과 補完은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수반된 갖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排除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는 1970년대에 들어 대기업과 독과점업체의 폐단이 두드러지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공해 문제 발생 등 경제성장에 수반된 갖가지 부정적 측면이 노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고도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國民福祉水準의 提高와 함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정부 지원도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80년 헌법은 獨寡占의 規制·調整·中小企業의 보호·육성 및 소비자 보호운동, 農·漁民自助組織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예외적 허용 등 새로운 내용을 담은 경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제질서에 대한 폭넓은 수정을 加하였다.

1987년 「6·29 민주화선언」으로 사회전반의 자율화 분위가 高潮되자, 전국적인 규모의 勞使紛糾가 발생하였으며, 노사분규는 자주적인 노조활동의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 생활급에 상응하는 適正賃金 支拂, 근로자의 경영참가,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핵심적 爭點으로 등장시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질서에 있어서는 福祉國家와 社會正義 실현을 위한 사적 자치와 財產權에 대한 규제 및 조정을 강화하고, 경제과정에서의 국가적 통제와 계획을 비롯한 공적 규제를 확대하는 조치가 뒤따랐다.

그러나 1992년의 文民政府의 출범과 함께 정부는 정치권의 개혁과 사정을 실시하고 1994년 정경유착과 투기 등 이른바 「검은 돈」의 유통을 근절하고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金融實名制를 단행함으로써 제도적인 개혁을 이룩하고, 기존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경제의 自律的 측면을 강조하는 등 법을 이용한 人爲的인 장벽과 가격통제를 비롯한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철폐하고 차별적인 租稅制度를 개혁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農產物과 商業分野에 이르기까지 대외시장을 개방하고 WTO(국제무역기구)에 의한 새로운 世界貿易秩序를 받아들임으로써 無限競爭時代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世界化 戰略을 추진

중에 있다.

(2) 經濟體制的 基本性格

남한 경제체제의 기본성격은 경제질서와 관련이 있는 법규정²⁾에 잘 나타나 있다. 憲法 第119條 第1項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남한경제는 自由市場經濟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同條 第2項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調和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 경제에 관한 국가적 規制와 調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에는 한계를 두고 있다. 헌법에는 ① 국가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貨幣經濟·自由競爭·契約의 自由 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 자치의 기본을 유지하여야 하며,

2) 경제체제의 基本原理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규정은 經濟一般에 관한 제9장과 財產權 일반을 보장한 제23조 제1항, 職業選擇의 자유를 규정한 제15조, 無體財產權을 보장한 제22조 제2항 등이다. 이에 반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개인의 機會均等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강조한 憲法前文, 노동의 권리에 관한 제32조 제1항, 노동자의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규정한 제33조,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위기에 있어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처분과 그에 관한 명령권을 규정한 제76조 제1항 등은 경제체제에 관한 간접적인 관련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경제에 관한 規制와 調整은 법치국가적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③개인의 財産權을 침해할 경우에도 사회적 利益과 調和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④ 재산권의 침해시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전제하고, ⑤ 정치적 이유에 의한 沒收와 擔稅能力을 무시한 조세 부과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⑥ 자본주의 범위내에서 規制와 調整을 행하는 경제계획은 무방하지만, 전면적인 국가관리경제를 의미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내지 전면적 사회화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남한의 경제체제는 국가가 資本主義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經濟全般에 개입하는 市場經濟秩序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私有財産制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經濟民主化를 위한 국가 규제와 調整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³⁾

그러나 남한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자유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

3) 이와 같은 견해는 (Nipperdey)가 경제질서의 모델을 資本主義的 自由市場經濟秩序,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및 사회주의적 計劃經濟秩序로 구분하는 데 따라 남한의 경제체제를 구분한 경우다. 이에 대해서는 Hans Carl Nipperdey, *Soziale Marktwirtschaft und Grundgesetz* (Köln-Berlin-München-Bonn: 1965); 권영성, 「黨法學原論」 참조.

ktwirtschaft)」의 개념적 원천인 독일의 경제체제와 동일하나, 社會福祉·社會正義·經濟民主化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적 측면에서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⁴⁾

남한의 경제질서는 경제적 자유에 기초하는 私有財產制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질서로서 市場經濟를 택함으로써 화폐수단에 의한 가격 형성과 자유경쟁에 따른 생산·고용·분배가 결정되는 경제구조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의 내지 부분적 사회화를 의미하는 公正去來, 독과점 배제, 財貨의 공정 분배, 사회적 수요에 상응하는 생산, 저소득층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분배정책, 경제적인 불평등 요인 제거 등과 사회·정책적 조세제도, 사회보장제, 適正 賃金制와 최저 임금제 도입, 완전고용, 생산재의 부분적 有償國有化 등에 있어서는 독일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와 비교하여 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 私有財產制의 保障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재산권을, 제22조 제2항에서는 無體財產權을 보장하고 있는 바, 남한의 경제질서는 전통적인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유재산제는 단순히 재산권의 법적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

4) 경제체제의 理念的 基盤으로서의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본 연구 제4장 제2절 統一韓國 經濟體制의 理念的 基盤을 참조할 것.

이 아니라 헌법상의 전체적 성격을 규정하는 基本 價値다. 그러나 제23조 제1항에서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明示하고 있으며,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法治主義에 입각한 財產權의 社會的 留保와 함께 土地 公概念⁵⁾까지 적용하고 있다.

(나) 自由競爭的 市場經濟

남한은 自由競爭的 市場經濟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119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職業 選擇의 자유를 규정하여,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원칙적으로 自

5) 土地公概念이라 함은, 토지는 그 소유주가 누구이든, 그것이 가지는 機能 내지 適性, 또는 그것이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公共福利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적절한 규제가 가하여져야 한다는 개념 내지 原則, 즉 土地所有權의 공공성 내지 사회적 구속성을 말한다. 이의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2항, 제119조 제2항, 제120조 제2항, 제122조 등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의 2에서 찾을 수 있다.

由競爭에 입각한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편 제32조에서는 노동자의 適正賃金 보장과 最低賃金制 실시, 노동조건기준의 인간존엄성에의 합치, 女子와 연소자 노동의 특별보호 등을 규정하고, 제33조에서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5조 제1항에서는 국민(기업주)의 環境保全義務를 규정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다) 社會正義 指向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成長 및 安定과 適正한 所得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經濟力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시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 社會正義에 입각한 경제질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정의가 具現되는 사회는 적정한 소득 분배, 경제력 남용방지,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고 모든 국민의 脫貧困化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라) 社會的 市場經濟 政策

남한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자연자원의 제한적 社會化를 許容하고 있다.⁶⁾ 헌법 제120조 제1항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 자연자원의 부분적 社會化를 전제로 한 특허를 규정하고 있다.⁷⁾

둘째, 경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경제계획에는 부분적 경제계획과 총체적 경제계획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분적 경제계획은 헌법 제12조 제2항 “국가는 그(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3조 제1항 “국가는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되고 있다.⁸⁾ 총체적 경제계획은 제119조 제2항 “경제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라는

6) 사회화란 공법적 수단에 의해 개인소유의 재산일반을 국유화 또는 공유화 하거나 소유권의 성질 또는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 즉 재산권의 사회적 변형을 말한다. 사회화의 대상은 그 사회의 부분적인 생산재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그 사회의 모든 생산재에 대한 전면적 사회화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7) 자연자원의 부분적 사회화를 규정한 법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광업법」, 「수산업법」, 「전기사업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이 있다.

8)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로는 「국토개발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업기본법」, 「농지의 안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이 있다.

규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셋째, 기업의 국민화를 들 수 있다. 기업의 유지와 발전이 기업운영의 당사자에 의해서만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 협조에도 의존하고 있다. 기업이윤의 사회적還元과 기업의 경제적 기능 합리화를 위해 「資本市場育成에 關한 法律」 등을 제정하여 기업의 국민화, 즉 국민적 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경제력 남용방지와 대외무역의 규제·조정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시장의 지배와 남용을 방지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어 獨寡占 등 시장지배와 정부가 경제력 남용을 규제·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르는 富의 偏重과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며, 기업간의 공정경쟁을 촉진케 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다섯째,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들 수 있다.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 地域經濟育成을 위한 국가적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明示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중소기업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放任的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여섯째, 농·어민의 이익보호 및 소비자운동의 보장을 채택하고 있다.

남한 정부는 헌법 제123조에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운동 보장 조항을 두고 있다.⁹⁾ 이는 소비자의 權利意識을 고취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 權利保護에 관한 국가 의지를 천명하고, 기업가의 기업윤리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9)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이 경제질서의 내용이자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데 대해서는 許鎔, 「소비자보호운동의 헌법적 고찰」(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참조.

10)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 「소비자보호법」(1986. 12. 31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계량법」, 「공산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 權益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과점 기업의 권리가 축소되어야 하고, 적정한 가격과 공정 거래를 위한 제반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의견이 소비자 보호행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과학기술혁신과 정보·인력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北 韓

(1) 社會主義 體制의 展開過程

194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북조선 분국이 결성되고, 1946년 2월 평양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¹¹⁾가 창설되면서 북한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민주개혁이라는 명분아래 1946년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단기간에 土地改革을 실시하여 半封建的, 植民地的 생산관계를 변화시켰다. 토지개혁을 통해 북한은 5정보 이상 소유한 自作農의 토지, 일본인 및 민족반역자 소유토지, 부채 지주토지 등은 無償으로 沒收하여 영세농민과 소작농가에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1946년 8월과 9월에는 산업·운수·채신·은행 등 주요 기간 산업의 국유화 법령이 공포되었다. 그 결과 당시 북한 전체 산업시설의 약 90%에 달하는 1,000여개의 산업시설이 國有化되었다. 1947년 12월에는 地下資源과 林產資源 및 산업자원에 대한 국유화조치가 단행되었다. 1954년부터는 협동조합화에 착수한 이래 1958년 8월 농업·수공업·중소상공업 등의 협동화를 완료하여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를 완전히 구축하였

11) 동 위원회는 1947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칭되고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현 북한정권의 모태가 되었다. 통일원, 「'92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2), pp. 72~73.

다.¹²⁾

이와 같은 북한의 사회주의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북한의 사회주의화 과정

시 기	개 혁 내 용
1946. 3. 5.	土地改革에 관한 법령 공포
1946. 8. 10.	주요산업의 國有化 법령 공포
1946. 12. 22.	지하자원·산림·수역 국유화 법령 공포
1954. 4.	協同組合化에 착수
1958. 8.	농업·수공업·중소상공업의 협동화 완료
1958. 10.~12.	協同組合을 里단위로 확대, 개편(협동농장으로 개칭)

(2) 經濟體制의 基本性格

북한은 경제질서면에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질서와 반대되는 社會主義的 計劃經濟秩序(sozialistische Planwirtschaft)를 견지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전면적 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그 이념은 이른바 '인간에 의한 인간의 경제적 착취 배제와 전체 인민의 복리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두고 있다.

12) 북한의 토지개혁 및 농업의 집단화, 산업의 국공유화에 대해서는 林陽澤, 「南北韓 産業 및 技術協力の 推進方案에 관한 研究」(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89), pp. 30~61 참조.

따라서 경제적 착취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사유재산제를 배제하고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한 중앙집권적 관리·계획 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生産·分配·消費 등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통제, 경제질서에 대한 공법적 규제 및 경제계획의 실천 수단인 무제한의 命令과 強制를 발동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경제건설의 기본목표를 사회주의 工業化를 달성하는 데 두고 있는 바, 이는 사회주의 원칙하에서 만이 공업화가 촉진될 뿐만 아니라, 공업화가 되어야 비로소 주민들의 물질적, 生活水準이 향상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革命이 완수되어 ‘참다운 사회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소련으로부터 사회주의 理念과 體制를 이식받아 스탈린식 중앙집권적 명령·계획경제체제를 구축, 지금까지 이를 고수하고 있다. 즉 북한은 정부가 사실상 모든 生産手段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生産, 生産물의 分配, 輸出入 등 국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계획경제의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한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¹³⁾

13)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3~1993」(서울: 北韓研究所, 1994) 참조.

(가) 社會主義的 所有制度

북한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철저히 배제하는 사회주의적 所有制度를 유지하고 있으며¹⁴⁾ 이를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生産手段과 生産物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로 개념화하고 있다.

1992년 4월에 전면 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의하면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고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헌법 제20조, 22조).

1977년 4월에 공포한 「토지법」 제9조에서도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3조에서도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다방면으로 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협동단체의 土地所有權도 실제로는 그 사용권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소유제도는 전인민적 소유, 협동적 소유 등으로 나

14) 북한에서 個人所有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의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消費用品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 소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協同農場員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생산을 위한 약간의 小農機具들도 개인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소유물은 그 所有者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相續權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농민시장」은 개인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장소로 利用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23조 참조.

뉘어질 수 있는데, 이 둘은 사적 소유 철폐에 기초한 社會主義的 소유형태로서 사회화 정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 동일한 소유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전인민적 소유대상은 자연자원, 중요공장의 기업소, 항만, 은행 및 교통운수, 체신기관, 상업수매기관, 도시와 勞動者區의 공공시설 그리고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등이다(사회주의 헌법 제 20조).

반면, 협동적 소유는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過渡期에 발생하는 소유형태로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하에 농민과 수공업자, 그리고 중소 상공업자들이 그들의 사적 소유인 생산수단을 통합하여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⁵⁾ 즉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형태로서 사회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전인민적 소유로 이행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

(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

북한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자원 배분이 인위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 국

15)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23조.

16)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23조 참조.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198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현재 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생산수단을 장차 “전인민적 소유(국유)”로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북한은 이 단계를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시기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p. 364.

가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시장경제체제가 생산의 無政府性으로 인해 不景氣와 경제공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실업 발생이 필연적이며, 실업을 자본가들은 노동의 착취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生産手段의 사회적 소유화와 生産, 分配, 所費의 계획화를 통해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¹⁷⁾

북한은 1948년 공산정권 수립시 계획경제 실시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1958년 토지 및 생산수단의 국·공유화를 완료하여 계획경제 실시 기반을 확립하였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中央當局에 집중되도록 하였으며 하부조직이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중앙집권적 명령·계획경제 체제」를 구축하였다.

경제계획의 作成, 執行, 監督은 정무원 산하의 「국가계획위원회」를 정점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一元化되어 있다.

북한은 1965년 각 「地區計劃委員會」와 중앙공장·기업소의 계획부서를 정무원산하 「國家計劃委員會」 직속으로 개편하여 계획체제의 中央執權化를 강화하였으며¹⁸⁾ 모든 계획수치들을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시켜 통제와 조정을 받도록 하였다.

17)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34조 및 35조.

18)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p. 365.

경제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은 「계획의 세분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간 계획이 상호 맞물리도록 하는 계획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크고 작은 모든 경영활동이 빈틈없이 맞물리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⁹⁾

(다) 統制的 經濟管理體制

북한 경제관리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 경제를 지도·관리하는 모든 활동에서 당의 路線과 政策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黨委員會」가 중심이 되어 경제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그 집행을 지도·통제하고 있으며, 물질적 유인보다는 정치·사상적 자극에 중점을 두어 근로자의 생산적 열의와 적극성을 유발하고 있다.

경제관리체제는 농업관리부문의 「청산리 방법」, 공업관리부문의 「대안의 사업체계」 및 상업유통 관리부문으로 나뉘어진다.

우선 북한 농업은 국가적 所有와 협동적 소유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 데, 국가적 소유 대상은 국영 농·목장, 국영 농기계 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 등이 있으며, 協同的 소유에는 협동농장이 있다.

농업관리는 1960년 2월 金日成이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 협동농장을 방문하여 하달한 지도원칙인 「청산리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청산리방법」의 주요내용은 ① 상급기관이 하급

19) 위의 책.

기관을, 웃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고, ② 항상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며, ③ 모든 활동에서 정치활동을 先行함으로써 노동자 각자의 熱意와 創意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김일성이 1961년 12월 평안남도 용천군을 현지도 한 이후에는 「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를 주축으로 하는 기업 지도체계를 수립하였는데, 이 지도체계의 특징은 ① 郡을 기업적·종합적 관리 단위로 취급하여 郡內 협동농장들의 생산활동과 관련 기업소의 재정활동 등 모든 기업활동을 총괄적·집체적으로 지도하며, ② 郡內 農機械 作業所, 農機械 修理工場, 獸醫防疫所 등 국가단위 기업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이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의 협동농장이나 국영 농·목장 생산조직의 기본형태는 작업반이다. 작업반은 일정한 耕地, 勞動力 및 農器具를 할당받아 부과된 年間 생산과제(노르마)를 수행해 내고 있다. 협동농장의 작업반은 생산작업의 특성과 지역적 조건에 따라 農産 작업반, 畜産 작업반, 果樹 작업반, 農器具 수리반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작업반 밑에는 15~20명으로 구성된 수개의 分組가 조직되어 있다.

20) 청산리방법은 토지를 비롯한 모든 농업 生産手段이 전면 國有化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의욕 喪失과 허탈감을 타개하기 위한 思想性和 政治性を 강조한 관리방법이다. 李相鎬, 「北韓의 經濟管理體制와 經濟制度」(서울: 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0) 참조.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分組管理制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都給制로서 일정량의 작업을 분조별로 할당하여 실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공업관리는 근로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기업은 소유형태별로 국영공장·기업소와 협동단체공장·기업소, 그 규모에 따라 단일기업소, 연합기업소, 총기업소 등으로 나뉘어진다. 기업소 관리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공장, 기업소를 「工場黨委員會」를 중심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 대중을 공장관리에 참여시키는 관리체계이다.²¹⁾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해 사회주의적 경영지도체계의 확립, 勞動意慾 고취, 生産能率 향상, 생산조직의 合理化, 資材의 원활한 供給 및 생산단위별 자체 소비체계확립 등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²²⁾

‘대안의 관리체계’는 구체적으로 ① 공장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체제, ② 통일적·집중적 생산체계²³⁾, ③ 중앙집권적

21) 北韓研究所, 「북한총람」, p. 370.

22) 대중노선에 입각한 경제관리체제라는 것은 당위원회의 집단적인 지도하에 政治活動을 선행시켜 大衆을 동원하고 上部機關이 하부기관을 도우며 경제를 管理·運營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3) 이는 기사장을 참모장으로 하여 生産指導部署, 계획부서, 技術部署 등 공장참모부를 조직하고 기사장이 집중적인 지도를 행하는 체제이다. 李相鎬, 「北韓의 經濟管理體制와 經濟制度」, p. 32.

資材供給體系²⁴⁾, ④소비물자 공급체계²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⁶⁾

한편, 북한에서의 기업경영은 기업소 이익증대를 위해 獨立採算制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장당위원회」를 중심으로 共同經營되는 공장이나 기업소의 무사안일과 타성을 방지하고 각 기업소에 이윤추구 의무와 생산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국가에서 할당해 준 자금과 물자 범주내에서, 즉 국가계획의 범위내에서만 독자 운영되기 때문에 서방 국가에서 공장 및 기업체가 생산과 분배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自律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북한에서의 商業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구실을 하고는 있으나,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경제원칙에 의

24) 이는 자재공급활동이 전문적인 資材商社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재상사는 중앙정부의 物資給計劃에 의거해 각 기업소, 기관에 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장·기업소는 자재를 확보하는데 요구되는 복잡한 업무에서 탈피해 生産活動, 設備管理, 生産組織과 기술 지도에 전념할 수 있으며, 생산 뿐만 아니라 資材供給計劃을 동시에 掌握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고 한다.

25) 이는 공장 後方部署와 노동자 後方供給機關이 기업소의 근로자와 해당주민에게 생활필수물자를 직접 供給하고 있는 체계이다. 각 기업소, 공장 내에는 소비물자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후방담당부서지배인과 후방공급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26) 이 밖의 자세한 설명은 李相鎬, 「北韓의 經濟管理體制와 經濟制度」, pp. 32~33 참조.

해 중앙에서 계획·통제되고 있다. 북한의 상업유통체계는 소유형태면에서 社會主義 정권수립 초기에 이미 個人 상업망을 폐지하고 협동단체 상업망을 국영상업망에 편입시킨 형태를 취함으로써 中央管理的 流通體系를 확립하였다.

북한에는 현재 國營商業網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協同市場 상업망과 농민시장이 보조역할을 하는 상업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商業 流通施設은 백화점, 종합상점, 직매점, 리상점, 협동농장상점 등이 있으며, 곡물을 제외한 雜貨, 衣類, 食料品, 工產品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상업유통 운영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購買割當制'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품생산과 공급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다고 보아진다.

상품가격은 투하된 노동비용을 기준으로 社會的 必要勞動時間을 算出하고 商品價値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遊離시킨 상태에서 결정되고 있다.²⁷⁾ 대중소비품의 가격은 낮게 책정하되, 供給量이 제한되는 소비품은 需要調節을 위해 사회적 필요노동시간과는 관계없이 높게 책정하고 있다. 상품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價格 一元化가 적용되고 있는데, 가격 일원화 대상은 국가계획에 의거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모든 생산품을 대상

27) 북한은 機關, 企業所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리지 못하도록 전문 價格制定 기관을 통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전문 가격제정 기관은 모든 경제부문에 당의 가격정책 집행정형을 시달하고 價格에 대한 監督과 檢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法的 制裁措置를 취할 수 있다.

으로 하나, 일부 채소와 과일, 수산물 가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생산품에 대한 가격은 국가가격 결정기관에서 정하는 標準價格을 기준으로 일정범위내에서 수요와 공급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다.²⁸⁾

2. 南北韓 經濟體制 統合方向

前 節에서 남북한 단일 경제체제를 選擇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체제선택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느 체제로의 통합이 當爲的인 것인 가를 考察하고자 한다.

가. 南北韓 單一經濟體制 選擇基準

(1) 社會主義 體制의 根本的 限界와 非效率性

사회주의 체제는 스스로 體制變化를 하지 않을 경우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根本的인 限界과 체제의 非效率性에 기인하고 있다.

(가)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限界

사회주의 체제는 체제가 견지하고 있는 특성상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개혁에 따른 체제전

28) 北韓研究所, 「북한총람」, p. 373.

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첫째, 社會主義는 資本主義의 구성원리인 시장기구의 메카니즘과 生産財의 사적 소유를 부인하고 국가에 의한 계획기구의 운용과 생산수단의 國家所有制(state ownership)를 주장하고 있다. 이의 이념적 根源은 인간을 無政府性과 無計劃的인 시장질서, 즉 시장의 맹목적 自然法(blind natural laws of the market)에 맡기는 것이 非人間的이라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²⁹⁾

마르크스는 시장에서의 競爭이 人間性을 해치고 인간과 인간사이의 형제애를 抹殺하기 때문에 ① 시장의 맹목적인 자연법은 인간의 의식적인 계획에 의해, ②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競爭이나 鬭爭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형제애적인 協同과 團結(brotherly cooperation and solidarity)에 의해, ③ 경제행위를 위한 物質的 誘引(material incentives)은 兄弟愛라는 정신적 유인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사적소유 때문에 인간은 자기운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각종 人間疏外와 貧富格差 등 각종 害惡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적 소유를 否定하고 이를 사회적 소유로 환원하면, 자본주의의 害惡은 근원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9) K. Marx & F. Engel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in *Ausgewählte Werke* (Moskau: Verlagäprogress, 1986).

그러나 마르크스가 그렸던 人本主義 社會, 경쟁도 없고 兄弟愛와 협동정신이 넘치는 사회, 私有가 없고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사회는 작은 사회(small society)의 構成原理로 적합하다. 다시 말해 사랑·협동·공유의 원리는 가족이나 친족, 공동체³⁰⁾ 등과 같이 작은 사회의 구성원리 내지 조직원리로서는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도시, 국가, 국제사회 등과 같이 큰 사회의 구성원리 및 組織原理로서 적용되기 어렵다. 큰 사회의 구성원리, 조직원리는 正義·競爭·私有의 원리가 적용될 때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失敗는 작은 사회의 구성에 적합한 理念的 원리를 큰 社會(great society) 또는 열린사회(open society)에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려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³¹⁾

둘째, 이러한 판단은 큰 사회 혹은 열린사회의 구성원리와 발전원리에 대한 理解不足, 보다 구체적으로는 人間의 本性(human nature)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은 자기 관심분야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情報와 知識을 활용하여 스스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잠재능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그

30) 기독교에 기반을 둔 共同體의인 삶과 그 운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1) F. A. Hayek, *The Fatal Conceit: The Errors of Socialism* (Routledge: 1990), 朴世逸, 「體制比較의 經濟學—Perestroika에 대한 바른 視角정립과 第3의 길의 모색을 위하여—」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제도연구자료 9121 (서울: 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1)에서 재인용.

러나 자신의 潛能力과 創意性은 경쟁시장에의 자유로운 進入과 離脫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經濟活動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만 제대로 발휘된다. 다시 말해 私的自治를 보장하는 私有財產制가 보장될 때 만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경쟁 시장질서는 각자의 관심 분야에의 공헌이 공익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질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쟁시장의 구성원리와 발전원리는 正義, 私有, 自由와 같은 理念에 기초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가족이나 공동체 등 작은 사회의 조직 및 발전원리인 사랑, 협동, 공유의 원리를 큰 사회와 국가에 확대하여 실천하려는 사회주의적 시도는 機能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³²⁾

셋째, 사회주의 체제형성에는 사회는 만들어 나가며,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이라는 소위 「設計主義(constructivism)」의 사고가 뒷받침되어 있다. 사회는 形成되어지고 發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意圖에 의해 얼마든지 人爲적으로 창조·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內在되어 있다. 사회주의에는 사회 모든 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하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를 얼마든지 바람직한 방향, 인간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再組織하고 再構成할 수 있다는 知的傲慢과 自己確信이 사회주의적 시도 속에 내포되어 있다.³³⁾

32) 朴世逸, 같은 책, p. 16.

33) 위의 책.

(나) 社會主義 體制의 非效率性

사회주의 경제는 그 체제가 성립된 시기, 특히 舊體制를 타파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수립하였던 초기단계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가 生産要素와 資源을 단기간에 걸쳐 극대화할 수 있는 명령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의 量的 擴大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해 勞動生産性的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말해 경제의 內包的 成長(intensive growth)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서부터는 그 效率性的의 한계를 가져왔다. 그 후 경제 전반에 걸쳐 構造的 부족현상이 나타났으며 과학 및 技術開發의 침체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부족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의 落後性은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에서 경험할 수 있듯이 體制轉換으로 이어졌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不足經濟(economies of shortage)의 根源은 재화에 대한 慢性的 超過需要와 과소생산에서 비롯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이유는 計劃된 投資(planned investment)가 計劃된 貯蓄(planned saving)을 항상 앞서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人力이나 源資財의 공급 차질로 인해 생산중단이나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것에 대비하여 항상 필요 이상의 在庫를 보유하려고 하며, 과도한 원자재와 部品, 過剩人力을 확보해 놓으려고 한다. 기업운영 책임자는 投資財

源이나 인력, 원자재가 기업운영에 필요한 적정 보유수준을 넘고 있어도 항상 부족한 것으로 報告한다.³⁴⁾

투자가 저축을 항상 앞서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投資에 수반되는 비용(投資費用)을 투자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이 적자를 발생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기업의 赤字를 중간 생산물이나 최종 생산물 가격을 任意的으로 조정하거나 가격인상, 또는 補助金 支給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생산과 판매실적에 따라 그 성과가 평가되지 않고 기업 운영자의 對政府 협상력이나 설득력에 따라 평가된다. 협상력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업은 黑字를 낼 수도 있고 赤字도 낼 수 있다.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기업경영이 아니라 생산목표의 달성이다. 따라서 인력이나 부품, 원자재의 과잉보유에 따른 費用發生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계도 계획된 투자(需要)가 계획된 저축(所得)을 항상 앞서고 있다.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제품의 가격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소비제품에 대한 수요가 항상 공급을 超過한 상태에 있다. 가격결정이 시장기능에 맡겨져 있다면 過剩需要를 조절할 수 있으나 가격이 정부당국에 의해 統制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

34) J. Kornai, "The Hungarian Reform Process: Visions, Hopes and Re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86. 박세일, 같은 책, p. 11에서 재인용.

요는 配給制(rationing)를 통해 調整될 수 밖에 없다. 이로써 사회전체는 항상 物資不足 상태에 있게 된다.

부족의 경제는 需要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供給 측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가 다음과 같은 생산 능력보다 더 낮게 생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⁵⁾

첫째, 국영기업의 責任者는 기업의 生産能力을 일반적으로 과소 보고하고, 그 반면에 원료, 부품, 노동력은 앞서 지적했듯이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계획당국이 부여하는 生産目標量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기업에 있어서는 生産費用의 최소화나 利潤의 극대화 보다 生産目標值의 달성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생산목표치가 가능한 限 낮게 부여되도록 만드는 일에 신경을 쓴다. 중앙당국에서도 生産費用을 크게 문제시 하지 않는다. 생산비용을 문제시할 경우, 수반될 生産監督 및 생산과정의 監視費用(monitoring cost)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운영자나 생산근로자 모두가 자신의 能力과 誠意를 다해 생산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근로에 대해 자신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動機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개인이 기업의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의 그 代價(所得)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열

35) 위의 책.

심히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代價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소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노력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그 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다 높은 次元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가 드물다. 그런 재화가 만약 있다고 해도 노동을 통해 취득하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에 의해 가격구조가 二重으로 되어 있어 食料品 등 기초적 生必需品 값과 집세 등은 대단히 싸나 TV 등과 같은 耐久性 消費財나 良質의 물건은 대단히 비싸다. 수개월 내지 수년의 소득을 합해도 고가 소비재(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를 확보하기 어렵다. 소득의 미미한 상승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국영기업의 責任者든, 勞動者든 기업내·외부로부터 生産性 提高와 관련된 어떠한 경쟁압력도 받지 않는다.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無賃乘車者(free rider)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차지하려 할 뿐이다. 生産性 向上을 위한 노력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 그 만큼 生産費用이 절감되거나 소득감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와 같은 外部效果(external effects)가 반영되는 장치가 없다. 無事安逸에서 오는 이익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돌아가지만, 그 결과인 과소생산과 비효율적 생산에 대한 負擔은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는 셈이 된다. 典刑的인 ‘共有의 悲劇’(tragedy of commons)이 존재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주의 경제는 전 세계적인 生産性 競争, 技術開發 전쟁에서 영원히 낙후되고 지식이나 기술, 정보의 축적으로부터 크게 疏外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들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① 과학과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영기업이 勞動生産性을 향상시키거나 研究·開發(R&D)을 통해 생산증대를 이룩할 경우, 중앙당국이 곧바로 생산목표치를 上向 調整하여 내려보내기 때문에 구태여 기술개발에 집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하의 시장이 販賣者 中心市場(seller's market)이기 때문에 消費者 기호에 맞는 물품을 개발하거나 품질을 개선시키기 않아도 商品消費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물자가 항상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유통전략(마케팅)도 추진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도 사회주의 경제가 원칙적으로 高賃金보다는 完全雇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현장은 일반적으로 過剩雇用(overemployment)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적정노동력 유지가 기본인데 과잉노동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生産性 향상 자체도 無意味할 뿐이다. 그리고 임금 수준도 어차피 낮기 때문에 고임금을 극복하기 위한 高附加價值 創造(기술개발)의 필요성도 강하지 않다. ②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메카니즘이 資源配分에 있어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숨어있는 자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희박하다. 흩어져 있는 未知의 정보, 知識, 技術 등은 競争過程(competition

process)을 통해 취득·개발되어 생산에 활용되어야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데 開發과 活用을 연결시켜 줄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한 두 과학분야에서 國力을 최대로 집중하여 기술의 優秀性을 발휘하게 할 수도 있으나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우수성을 보이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單一 目標追求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複數 目標追求(multiple priorities)에는 비효율적이다. 일반적으로 중앙계획기구가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로는 ▲生產品目이 다양하지 않고 品質이 비교적 均一한 경우 ▲生産過程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 ▲단일생산으로서 規模의 經濟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경우 ▲他企業과 수평적 聯關性이 크지 않은 경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탄이나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생산과 같은 단순, 균일상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지만 TV, Video, computer, 半導體 등의 전기, 전자제품이나 自動車나 船舶, 精密機械 등의 경우와 같은 고품질 상품의 생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각 産業部門의 수직·수평적 협력관계와 전문화된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技術情報를 연결하는 경제구조적 메카니즘이 缺如되어 있다.

(2) 市場經濟體制의 優越性

(가) 分配的 平等 具顯

公正分配的 측면, 즉 經濟正義(economic justice)적 측면

에서도 시장경제체제의 效率性을 논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재산소득 등 불로소득이 없고, 교육, 의료 등 소득의 기회가 균등히 제공되므로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며 기업가의 私的 이윤동기에 의하여 근로자나 소비자가 착취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正義란 無私公平을 의미한다. 私가 介入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命令經濟는 처음부터 명령을 내리는 計劃當局의 책임자, 관료의 재량적 판단, 즉 私가 개입된다. 따라서 정의롭기가 처음부터 대단히 어렵다. 자신과의 親疏關係에 따라 명령과 指示의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반면에 경쟁시장 경제에는 처음부터 私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獨占的 시장경제에는 독점자의 의지에 따라 가격과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私가 개입될 수 있으나, 경쟁시장에서의 가격은 시장의 需給原理에 따라 결정됨으로 개별 생산자가 마음대로 올리거나 낮출 수 없어 私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명령경제 보다 分配的 正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³⁶⁾

(나) 私有財産制度의 機能

경제체제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私有財産制度의 기능은

36) 물론 경쟁적 시장경제의 結果가 모두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결과를 보다 分配的 正義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市場 進入條件을 동일하게 하는 措置가 필요하다.

① 사회의 부와 소득 및 권력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意思決定構造를 多樣化하고 分散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사회의 生産資源을 보존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이는 생산자원의 監護機能(custodial function)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것은 바로 그 소유자가 가장 잘 돌볼 수 있다는 데서 연유한다. ③ 인간은 사유재산을 增殖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바, 사유재산제도는 生産資源을 증대하고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력한 動機를 부여하고 있다. ④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財產權 행사와 관련하여 심리적인 安定感을 부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여금 獨立心과 自主性을 부여함으로써 심리적인 安定感을 제공한다.

그러나 사유재산이 너무 不均衡하게 분배되고 그 權利가 無秩序하게 사용될 경우, 사유재산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여러가지 社會倫理的 문제와 경제 不安定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다) 動機誘引

물질적 유인은 職業이나 경제활동 차이에 따른 補償의 격차가 심해질 수록 더욱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인간은 대체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물질적인 유인에 민감하며, 개인의 행위에 대한 보상에는 개인의 能力이나 努力 등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物質的 誘引이 사회

가 원하는 개인의 행위를 유발시키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道德的 誘引은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유발함에 있어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뿐, 한 사회의 支配的 유인기구로 활용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도덕적 유인은 개인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誘引構造를 가지기 어려우며, 사회 발전을 위한 명목으로 도덕적 유인이 濫發될 경우 動機 誘發의 효력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 유인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유인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주어지는 것이 동기유발을 위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물질적 유인이 사회의 所得 不平等을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한 국가의 경제가 신속한 産業化와 경제사회의 近代化를 추진할 경우에는 職種別 기능과 전문성에 따라 물질적유인 격차가 더 확대될 소지가 있으며, 물질적 유인이 인간의 物慾과 利己心을 부추김으로써 사회적인 부작용과 역효과를 수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물질적 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경제과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勞動에 따른 分配'도 완전 공산주의에서의 '必要에 따른 分配'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物質的 誘引에 기초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誘引機構가 效率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① 유인 대상이 되는 개인이 유인 결과에 影響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② 예

상되는 유인의 형태(예: 報酬)가 이를 수령하는 자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③ 개인에게 주어진 課業이 적절히 수행되는 지의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하며, ④ 과업에 대한 評價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³⁷⁾

나. 南北韓 經濟體制의 市場經濟體制로의 收斂可能性

남북한 체제가 체제 수렴론적 입장에서 하나의 체제로 形成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일반론적 視角에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수렴이란 단어는 원래 자연과학, 특히 生物學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서로 다른 생체들이 변화되는 환경에 適應함으로써 나타나는 동일한 形態, 機能, 行動樣式의 변화와 발전을 의미하고 있다.³⁸⁾ 이를 경제체제에 적용할 경우, 수렴이란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政治·經濟·社會體制가 양자를 나누고 있는 기본적인 相異를 약화시키거나 해소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양체제가 유사한 체제상의 구조를 갖는 것이라고 할

37) J. M. Montias, *The Structure of Economic System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76), ch. 13.

38) Helmut Leipold, *Wirtschafts und Gesellschaftssysteme im Vergleich* (Stuttgart: Gustav Fischer, 1988), p. 263.

수 있다.³⁹⁾

사회주의 및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가지 유형으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체제자체 내의 상당한 수정과 변화를 거치고 경제적인 문제에 對處하기 위해 서로 일정한 새로운 체제를 선택하는 혼합체제 방향으로 수렴된다는 틴버겐(J. Tinbergen)⁴⁰⁾이나 갈브레이스(J. K. Galbraith)⁴¹⁾에 의해 대표되는 체제수렴론적 주장,

둘째, 자신의 倫理性과는 무관하게 사회주의는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체제로서 실패할 것이라는 미세스(Ludwig V. Mises)⁴²⁾나 하이에크(F. A. Hayek)⁴³⁾의 「사회주의 실패론」적 주장,

셋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서로 양립하지 못하

39) 수렴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K. Dopfer, *Ost-West-Konvergenz. Werden sich die östlichen und westlichen Wirtschaftsordnungen annähern?* (Zürich & St. Gallen: 1970); B. Windhoff, *Darstellung und Kritik der Konvergenztheorie* (Bern, Frankfurt/M.: 1971)를 참조.

40) J. Tinbergen, "Konvergenzen und divergenzen zwischen den verschiedenen Wirtschaftsordnunge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Nordrhein - Westfalen(ed.), *Unsere Wirtschaft-Basis, Dschungel, Dogma?* (Köln: 1973).

41) J. K. Galbraith, *The New Industrial State* (New York: 1967).

42) Ludwig V. Mises, *Socialism: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51).

43) F. A. Hayek(ed.),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Critical Studies on the Possibilities of Social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35).

고 결국은 다른 한 편의 지배를 받거나 붕괴에 이른다는 體制 非兩立論(Unvereinbarkeitslehre)적 입장이 있다. 체제양 비론적 주장에는 ① 마르크스(K. Marx)⁴⁴⁾의 辨證法的 唯物史觀에 의한 자본주의 붕괴와 그에 따른 사회주의 대두, ② 자본주의는 內部矛盾의 극대화로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발전적 성공에 의해 사회주의체제로 移行한다는 슈페터(J. A. Schumpeter)⁴⁵⁾식 “資本主義 沒落論”, 이와 정반대로 ③ 사회주의체제의 시장경제질서로의 이행이 필연적임을 역설한 로스토우(W. W. Rostow)⁴⁶⁾의 주장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넷째, “약화되는 수렴현상”을 주장한 것으로 이는 개별적인 분야에서는 수렴현상이 나타나지만 체제의 根源的인 상이함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견해를 말한다.⁴⁷⁾

이상의 체제변화에서 우리 관심과 논의의 焦點이 되는 것

44) Karl Marx,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vol. 23~25 (Berlin: Dietz Verlag Berlin, 1963).

45) J. A. Schumpeter, *Kapitalismus, Sozialismus und Demokratie* (Tübingen: Francke Verlag, 1974~5).

46) W. W. Rostow, *Stadien wirtschaftlichen Wachstums* (Göttingen: 1967).

47) 이에 대해서는 P. J. Wiles, “Zur Frage der Konvergenz östlicher und westlicher Wirtschaftssysteme,” V. E. Schneider(ed.), *Kieler Vorträge*, NF 55 (Kiel: 1968).

은 첫번째에 해당하는 체제발전 방향과 관련된 것이다.⁴⁸⁾

체제수렴론의 근거를 갈브레이스(J. K. Galbraith)는 産業社會의 계획수립의 필요성에서 찾았다. 그는 어느 경제체제라도 산업사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生産規模의 확대와 함께 지식의 전문화하고 고도화되며 산업기술 진보와 생산공정이 복잡 다단해지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산업사회에는 ① 專門技術을 가진 기술자집단(테크노크라트: Technocrat)의 대두, ② 산업지배의 개인으로부터 조직으로의 移行, ③ 寡占價格과 依存效果 등에 의한 시장기능의 유효성 減衰 현상이 나타난다.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는 産業社會에서 계획을 갖지 않으면 喪되게 되며, 그 결과 산업이 발달한 사회상호간 현저히 근사한 방향으로 進化하고자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보았다.⁴⁹⁾

갈브레이스와 같은 관점에서 틴버겐도 양체제의 수렴현상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⁵⁰⁾

첫째, 사회주의 경제는 산업구조 高度化에 따른 기술의 複雜化와 수요의 多樣化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될 뿐만 아

48) 두번째에 대한 논의는 통일한국의 體制統합과 부합되는 주장이므로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세번째의 논의는 첫번째의 體制 發展方向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그 해답이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네번째 해당되는 체제발전은 남북한간의 체제통합을 통해 통일후 경제체제를 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논의의 必要性을 상실하고 있다.

49) J. K. Galbraith, *op. cit.*, p. 20.

50) J. Tinbergen, *Do Communist and Free Economies Show a Converging Pattern in Soviet Studies*, vol. XII, no. 4, 1963, 金光洙, 「比較經濟體制論」(서울: 구민사, 1994), p. 262에서 재인용.

나라, 사회주의 체제가 견지하고 있는 고도의 집권화로 경제의 비능률적 弊害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체제변화적 현상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즉 ① 평등소득적 思考로부터 사회적 임금정책으로의 전환, ② 物量單位 價格으로부터 화폐 가치 가격비용으로의 전환, ③ 要素費用으로서 이자 적용, ④ 자유스런 소비자선택의 부분적 적용, ⑤ 수학적 기법에 의한 社會主義 最適計劃의 수립, ⑥ 중공업화에 의한 불균형발전으로부터 균형발전으로의 전환 등이다.

둘째,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상 수반되는 변화로서는 ① 철도, 석탄, 철강, 보험, 은행분야에 이르는 公的部門의 확대 ② 財政規模의 확대 ③ 自由競爭의 제한 ④ 反트러스터법에 의한 獨占 禁止 ⑤ 교육기회의 증대 ⑥ 大企業 및 정부의 계획화 ⑦ 불안정한 시장의 제거 ⑧ 장기 발전계획 수립, ⑨ 價格 및 賃金統制政策 실시 등이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체제변화가 最適體制로의 접근을 유도함으로써 체제수렴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제수렴론적 논의는 남북한의 경제체제 통합과 관련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체제 수렴론이 가지는 理論上의 한계에 있다. 체제수렴론은 양체제가 다른체제의 요소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수렴되어 간다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을 뿐, 남북한과 같이 실제 양체제가 통합되어 체제 單一化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별도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체제수렴론은 국가

체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일부 특정한 同質의 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파악하고 있을 뿐, 異質體制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사회주의 체제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체제수렴론에서는 수렴 현상이 양체제의 경제발전에서 따른 산업구조의 多樣化와 高度化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산업구조 고도화 현상은 바로 사회주의 체제 그 자체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北韓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가 남한에 견줄 수 있는 산업구조상의 다양화와 고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다양화를 통한 南韓體制와의 수렴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질체제의 통합은 경제부문에서의 질적 혼합 측면 이외에도 政治的인 變數가 크게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치적인 변수를 결정하는 경제력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셋째, 체제수렴론적 양상은 양체제의 경제적 效率性 提高를 위한 계획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이질적인 체제의 單一化를 지향하는 두체제의 소유형태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체제의 근본 원칙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해 체제수렴론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計劃의 必要性 대두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가 자원분배와 경제운용 제고를 위한 역할 增大와 관련이 있는 것일 뿐, 체제의 본질적인 면, 즉 생산수단의 귀속형태의 전환이나 經濟體制가 추구

하는 理想的 變화와 큰 關聯이 없다. 따라서 生産手段의 소유 형태와는 달리 양체제에서 수렴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체제의 相異性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⁵¹⁾

넷째, 체제수렴의 진행과정과는 상관없이 資源配分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기구의 자유로운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시장과정에 대한 간섭은 다른 부분의 干涉擴大를 초래하여 결국은 전면적인 統制로 이끌 수 밖에 없다.⁵²⁾ 왜냐 하면 경제는 오이켄(W. Eucken)⁵³⁾의 “제질서의 상호의존의 원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부분, 어떤 영역을 통제하면 다른 부분, 다른 영역에서 自由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합리적이고 유효한 混合體制란 기대할 수 없게 되어 혼합체제는 체제적 不安定으로 전면적 통제 아니면 전면적 자유로 낙착될 수 밖에 없다.⁵⁴⁾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이에크도 물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기름이 油汶을 퍼나가는 것처럼 중앙관리의 부분적 도입은 全面統制로 발전하여 “隸縱의 길”로 통한다고 말하고 있다.⁵⁵⁾ 양체제는 물과 기름과 같기 때문에 서로 용납될 수

51) 이런 맥락에서 체제수렴론은 위에서 제시한 體制發展의 네번째 유형을 통해 설명되는 것이 더 타당성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2) 미세스는 이를 “통제과급의 원리”를 통해 양체제 수렴불가능론을 설명하고 있다. L. V. Mises, *op. cit.*

53) W. Eucken, *Grundsätze der Wirtschaftspolitik(1952)*, 6. ed. (Tübingen : 1990).

54) Ibid.

55) H. A. Hayek, *op. cit.*

없으며 合理的인 혼합체제는 형성할 수 없다.⁵⁶⁾

결론적으로 위의 논리나 가설들은 각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지향하는 방법적인 側面과 관련하여 체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적 입장에서 개진되고 있을 뿐, 경제체제의 核心的 변화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를 현재 동유럽이나 중국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주의의 崩壞나 개혁에 따른 體制轉換 현상과 연관시켜 볼 때, 많은 부분에서 그 現實性을 상실하고 있다.

다. 南北韓 經濟體制 統合過程과 方向

體制收斂論에 의한 남북한 체제단일화가 불가능하다면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정부의 漸進的·段階的 통일방안에 근거한 남북한 경제체제 統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은 경제공동체 형성원리를 원용하여 도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발라사(Balassa)⁵⁷⁾식 경제공동체형성 이론을 그대로 원용하여 論議를 전개시키고 있는 바, 그 핵심은 「自由貿易地帶(Free Trade Area)의 創設 → 關稅同盟(Customa Union)의 結成 → 共同市場(Common Market)의 形成 → 貨幣同盟(Monetary Union)의 結成」을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 完全한 政治

56) Ibid.

57) Bela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Foruth Impression, 1973).

統合(Completely Political Integration)을 이루어 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⁵⁸⁾

남북한간 제도적 經濟統合을 다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經濟共同體 형성까지를 몇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南北韓이 공동으로 취해 나갈 경우, 經濟共同體가 달성될 수 있다는 단순논리를 전개하고 있다.⁵⁹⁾

이와 같은 논의에서는 남북한간의 經濟共同體 형성이 異質體制間의 경제체제 통합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경제공동체를 형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며 기능적(functional) 요소나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제공동체를 이루려는 경제주체가 어떤 경제체제를 운용하며, 어떤 경제수준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국가간 상호 승낙만 있으면 언제든지 형성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체제가 同質的이며 경제수준면에 있어서 서로

58) 그 대표적인 예로서 金世源은 ① 거래 및 협력의 확대(제한적 자유무역지역의 실현), ② 조정 및 접근의 제고(공동시장의 창설), ③ 경제동맹 및 경제적 통일의 3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김세원, “남북합의서의 남북간 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실천과제,”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제1회 통일학술세미나 「남북합의서의 후속조치와 실천적 과제」 (1992), p. 24.

59) 임양택은 남북한간의 경제통합과정은 ① 남북한 기본조약체결에 따른 경제교류협정의 체결과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② 간접교역의 확대와 직접교역의 추진, ③ 국제경제협력기구에서의 공동참여, ④ 남북한 경제특구를 위한 협정의 체결, ⑤ 경제통합체(단일혼합경제체제)의 형성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임양택, “제3의 남북한 통일방안과 경제협력에 관한 단계별 추진전략” (한국경제학회 발표논문), 1992. 2.

유사한 유럽공동체(EC) 국가가 單一市場을 형성하는 데에도 수많은 장애에 부딪혀 그 진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이나, 급진적인 통일을 이루었던 동서독이 傳統的 이론이나 制度的인 결정에 의해 經濟同盟을 형성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논의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⁶⁰⁾

따라서 발라사식 이론에 의한 남북한간 經濟共同體 형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

첫째, 발라사식 경제공동체 形成過程은 동일한 경제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국가간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 남북한과 같이 異質的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남한의 經濟體制는 의사결정의 分權化, 市場制度, 사유재산권, 동기유인, 자유개방경제를 골자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나 북한체제는 정부가 모든 生産手段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生産, 分配, 通貨, 輸入, 輸出 등 국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물의 특화에 따른 시장과 시장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발라사식 경제공동체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

둘째,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격심한 經濟水準과 規模의 차이가 발라사식 경제공동체형성을 저해한다. 경제공동체는 經濟

60) 金瑩允, “經濟統合의 事例研究와 南北韓 經濟統合 展望,”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研究論叢」, 제1권 2호 참조.

活動의 기능적인 면을 통해 단일경제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수준이나 技術水準 등 통합되는 두 경제가 질적인 면에서 대등한 경우, 경제 단일화는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으나, 경제수준면에서 월등한 차이가 나는 경우, 경제공동체 형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경제공동체형성은 경제적으로 劣等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優越한 국가에 대한 從屬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치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기가 어렵거나 不可能하다.

남북한간 이루어질 경제체제의 통합을 展望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간의 경제공동체는 유럽공동체나 북미자유무역지대 창설과 같은 形態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공동체는 양자가 상호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하에서만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역내 특수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利益을 지향하고 있는 유럽 諸國家間的 經濟共同體 形成이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창설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둘째, 남북한간의 경제공동체 형성은 서유럽국가간의 경제공동체 형성과는 달리 經濟力(economic power)과 발전정도(economic development)가 서로 크게 다른 경제주체간의 통합이기 때문에 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해 국가가 주권의 일부를 讓渡하고 쌍방간 초국가적인 기구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양보와 인내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의 경제공동체는 상호간의 경제수준이 평준화

를 이루고, 정치적인 결정이 이를 뒷받침 할 경우에만 效率的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남북한간의 경제공동체 형성은 장기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경제가 活性化된 후,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 급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경제교류를 통한 남북관계의 改善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정치적인 전기가 도래함으로써 급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체제 통합은 상호간의 경제수준이 平準化를 이루고, 정치적인 결정이 이를 뒷받침할 경우에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남북한간의 體制統合이 平和的으로,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秩序가 지배하는 福祉國家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 체제로 전환될 때 만이 가능하다. 북한의 남한체제로의 전환은 북한 주민의 정치·사회 의식과 민주화 의식이 높아져야 비로소 가능하다. 民主化 意識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북한경제 활성화는 통일이라는 민족적인 大課業을 이룬다는 인식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북한의 경제적 상황으로 보아 오랜기간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경제적 利得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確立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바꾸어 말해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은 「民族」이라는 개념이 상호 최상위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만이 가능하다.

第Ⅳ章 統一韓國 經濟體制

前章에서 우리는 통일한국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으며 그 실현이 체제수렴론적 방법에 의할 수 없음을 알았다.¹⁾ 本章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통일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어떤 형태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통일한국 경제체제의 基本價値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目標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한다. 이어 통일한국의 경제체제가 지향할 經濟政策에 대해서 살펴본다.

1. 基本價値와 目標

통일한국 경제체제의 기본가치는 經濟的 自由와 分配的 平等 및 福祉經濟體制의 具現에 있다.²⁾ 이중 경제적 자유는 체제의 근본적인 성격과 관련된 요소로서 經濟秩序의 측면에서

1) 남북한이 어떤 형태를 통해, 즉 점진적인 방법에 의해서든 급진적인 방법에 의해서든, 경제체제의 통합을 이루는 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논의를 생략한다.

2) 이와 같은 이념적 기본가치는 본 연구 내용의 대전제인 통일한국의 정치이념이 自由, 平等, 福祉의 설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政治理念을 경제적인 면에서 실천하는 方法上的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統一韓國의 政治理念에 대해서는 黃炳憲, 「統一韓國의 政治理念」(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를 참조.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平等과 福祉는 체제성격과는 무관하나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資本主義의 수정과 발전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언급 하여야 할 점은 후술하는 經濟的 自由와 分配的 平等 및 福祉經濟體制가 各各 별개의 분야로서 獨立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³⁾

가. 經濟的 自由

(1) 概 念

경제적 자유란 개별 경제주체가 財貨나 用役의 수요 또는 공급자로서 기능함에 있어 '효과적인 선택'(effective choice)을 제한하는 사회적 障礙物(social barrier)이 없음을 의미한다.⁴⁾ 경제적 자유는 이를 행사하는 주체에 따라 家計選擇의 自由(freedom of household choice)와 企業의 自由(freedom of enterprise)로 대별된다. 가계선택의 자유는 가계가 소비자로서 행동하는 消費者 선택의 자유, 生産要素의 제공자로서 행동하는 職業選擇의 자유를 말한다. 소비자 선택의 자유는 경제·사회적 이유로 말미암아 정부가 특정한 재화의 需要와 供給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

3) 따라서 상기 세 가지의 기본가치와 실천적 목표를 구체화함에 있어 서로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밝힌다.

4) G. Grossman, *op. cit.*, p. 9.

제가 보장해야 하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선택은 특정재화의 가격이 獨占價格을 형성하고 있거나,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을 경우 제약 받을 수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능력 한도내에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어떤 직업이라도 선택할 수 있거나 辭職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사회적으로 보장할 경우 행사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제약 요인들이 많다.⁵⁾

기업의 자유는 生産 및 投資活動, 가격결정, 기업 정리 등과 관련하여 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나, 勞動法, 都市計劃, 安全法規, 價格管理, 免許 등 각종규제를 통해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있어서는 私的所有, 경제적 배분결정기구에서는 市場經濟秩序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⁶⁾ 그러나 시장경제가 거의 전적으로 혼자 기능하도록 방치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⁷⁾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完全競爭 모델이 시장 생산을 조정하고 소

5) 예를 들어 국가기밀에 관계하는 專門家의 辭職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직업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설정한 條件(전문적 학위, 면허, 자격 등)들이 職業選擇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最低賃金制度는 취업기회를 제한함으로써 低生産性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要因이 된다.

6) 이는 이념적으로 自由資本主義, 修正資本主義 및 新自由主義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견지하고 있는 모든 이념형에서 찾을 수 있다.

7) 이는 自由資本主義의 입장을 의미하는데 自由競爭市場이 경제의 조절역할을 다른 어떤 권력적인 기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데에

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景氣變動, 無產者의 窮乏化, 노사간의 계급대립 등 사회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민간의 노력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 단적인 예가 자본주의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世界恐慌의 발생이었다.

따라서 국가 간섭을 통한 計劃的이고 組織的이며 綜合的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즉 시장경제를 취하면서도 경제를 국가가 유도하는 방식의 制度化가 필요한 것이다.⁸⁾ 즉 국가는 야경국가적 역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경제정책적 수단을 사용하여 개별 經濟活動을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간접 유

서 비롯되고 있다. 즉 자유경쟁시장의 메카니즘이 다수의 개인과 기업들의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調整함으로써 인간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가장 잘 실현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J. Philip Wogamann, *The Great Economic Debate -An Ethical Analysis-* 조운상譯, 「經濟 이데올로기 大論爭」(서울: 청사신서, 1981), p. 128; 個別經濟에 대한 국가간섭으로부터의 해방과 民間主導의 경제운영으로 국가는 이른바 夜警國家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경쟁질서의 법적·제도적인 질서 확립과 유지에 그 임무가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社會福祉 立法措置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시장의 메카니즘이 허용하는 限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 수준의 福祉政策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는 데는 同意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M. Friedman, *Kapitalismus und Freiheit* (Stuttgart Seewald: 1971) (영문 원본: *Capitalism and Freedom*, 1962) 참조.

- 8) 誘導方式의 경제정책은 國家計劃의 차원에서 수행하는 체계적인 경제계획을 통한 유도방식과 財政·金融의 諸手段에 의한 단기적 總需要管理에 의한 유도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후자를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美國을 들 수 있는 데, 이른바 케인즈주의적인 총수요관리를 통한 유도방식의 채택이었다. 그러나 70년대부터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과 國民福祉 停滯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도하고 국민의 生活安定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분야 진출이 각종 공유방식(國營企業, 公社, 公團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제도화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형태가 寡占이나 獨占으로 이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자유의 이념적 가치는 自由資本主義와 社會主義 양쪽을 부정하고 自由와 경제합리성을 겨냥한 제3의 질서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3의 질서가 自由放任과 中央管理의 중간, 이른 바 혼합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3의 길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에 의한 계획적 요소, 명령적 요소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 국한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즉 시장기능을 活性化하고, 시장기능을 補完하기 위한 정책의 범위내에서만 국가 계획과 명령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개입도 恣意的이고 裁量的 개입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틀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개입, 편의에 의한 개입이 아니라 原則에 의한 개입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밖에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내지는 시장에 들어와서도 극히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配慮를 하는 국가의 계획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해 경쟁시장에만 맡겨서는 바람직한 문제해결이 어려운 農業·中小企業 등의 낙후부문, 그리고 병약자·노약자 등 소위 시장에 들어와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질서적 이념은 경쟁질서로 표현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秩序自由主義(Ordo-Liberalismus)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⁹⁾ 질서자유주의는 상대적 個體原理가 지배하는 이념이다. 이는 자유에서 질서가 나온다고 보던 古典的 자유주의와는 달리 秩序에서 自由가 나온다고 보고 있다. 환언하면, 자유의 원리와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속에서 가장 잘 실현된다고 믿고있다.¹⁰⁾

이와 같은 경쟁질서에 있어서 시장경제는 '自生植物'이 아니라 '栽培植物'로 표현되고 있다.¹¹⁾

시장경제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장질서를 자연상태로 放任할 것이 아니라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람들의 自律的인 생활태도와 국가시책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자유경쟁에는 자유와 自己責

9) 서독이 전후 에르하르트(L. Erhard)에 의해 시행하여 1950년대의 서독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지대한 貢獻을 한 社會的 市場經濟(soziale Marktwirtschaft)가 질서자유주의의 토대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節인 統一韓國 經濟體制의 理念的 基盤에서 상술한다.

10) 이와 같은 경쟁질서는 뢰프케(W. Roepke)에 의해 잘 形象化되고 있다. 뢰프케가 지향하고 있는 제3의 길은 자유로운 사상과 經濟政策을 통해 공정하고 平等한 경쟁조건이 유지되는 규제된 자본주의이다. 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체제는 시장경제 원리가 올바르게 작용하는 경제체제로서 첫째, 獨占과 集中을 해체하여 모든 경제부문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주제로 하며 둘째, 국민의 프롤레타리아화를 防止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토지와 개인주택을 주며 셋째, 인구제한이나 公正競爭의 감시나 또는 법질서 유지와 같은 경제의 구조적 테두리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國家權力을 필요로 하고 있다. W. Röpke, *Gesellschaftskrisen der Gegenwart* (Erlensbach-Zürich: 1942).

11) Ibid.

任 하에서의 생활형성이 기초로 되어야 하며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制度的 장치와 사회경제적 제조건이 形成·維持되어야 한다. 自由資本主義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경제가 저절로 성립하고 자동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원칙하에서 국가에 의해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자유경쟁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기초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基礎政策의 確立을 위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즉 국가는 '해야 할 것'은 단호하게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하지 않는 확고한 意志를 가져야 한다.¹²⁾

(2) 實踐的 目標

통일한국 경제체제 이념으로서 경제적 자유가 지향하는 實踐的 목표는 시장기구를 資源配分의 主 메카니즘으로 사용하는 정책적 노력, 즉 競爭秩序政策(Wettbewerbsordnungspolitik)의 수립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첫째, 시장의 價格體系가 자원의 稀少性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에서 自由·公正 競爭이 지켜져야 한다. 생산물시장에서 자유·공정경쟁이 이루

12) 경제체제에서의 國家役割과 관련하여 프리드만(M. Friedman)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統一韓國의 경제질서 형성에 상당한 示唆點을 던져주고 있다. 프리드만은 시장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경쟁질서를 확립하여도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간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①活動規則의 설정·해석 및 유지,

어짐으로써 소비자주권이 실현될 수 있으며 생산요소시장, 특히 노동시장에서 자유·공정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産業民主主義가 달성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은 경제적 자원배분에 있어서 궁극적인 선택의 주체가 소비자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자유·공정경쟁은 노사간 對等交渉力の 성립을 의미하나,¹³⁾ 이의 확보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렵다.

둘째,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貨幣價値가 안정되어야 한다. 화폐가치의 안정은 중요한 經濟秩序政策의 하나이며, 시장의 競爭性 提高를 위한 경쟁질서정책의 가장

②市場의 失敗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③책임능력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등 세가지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게임의 법칙을 정하고 그것을 심판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경제면에서 볼 때 시장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며 경제력의 집중이나 파괴적인 경쟁, 불공정한 거래 등을 방지하고 계약 이행의 확보, 특히 財産權의 규정이나 貨幣制度의 정비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기술적 독점과 같이 시장에 의존하여 해결되지 않거나 해결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共謀나 結託으로 계약독점이 이루어져 자유거래가 저해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독점을 규제하여 公正去來를 도모함이 당연하나, 기술적인 효율성으로 獨占이 발생할 경우(예: 전화 서비스나 수도, 가스 공급 등) 독점이 불가피하다면 私的獨占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밖에도 어떤 개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그 비용을 적당한 方法으로 分擔시키기 불가능할 경우(예: 자동차 매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M. Friedman, *Kapitalismus und Freiheit* (Stuttgart: 1971).

- 13) 노사간의 對等交渉力은 노동시장에서 求職競争보다 求人競争이 보다 격심할 때, 혹은 강력한 민주적 勞動組合이 존재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기초적 전제조건인 하나이다. 화폐가치가 불안정하면 소득분배면에서도 不公正이 발생한다.

셋째, 經濟力의 集中(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즉 소유의 집중이 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유집중은 生産集中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생산집중은 산업화 과정속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얼마든지 바람직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生産集中은 반드시 소유의 집중, 소수 自然人에의 소유집중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생산집중과 所有分散은 얼마든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넷째, 勞使關係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다. 노사관계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조합결성과 단체교섭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團結權, 團體交渉權, 團體行動權의 노동삼권을 인정함으로써 임금,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 결정시 사용자와 자율·대등교섭이 가능토록 하며 강력한 민주적 勞動組合을 육성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공정보상과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노사관계 발전은 ①勞組 活性化를 통한 노사간 대등교섭력의 확립과 ②勞使間의 문제해결에 있어 정부나 제3자의 개입없이 노사 당사자들간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당사자주의의 발전·정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노사간 대등교섭력은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 운영되는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여야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써 團體交渉

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각종문제, 예를들어 임금·노동시간 결정 등에 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 등 노동조건에 관한 문제까지 노사간 자발적 합의에 기초,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사간 對等交渉力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규제가 축소되어야 한다.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이외 정부의 경제에 대한 규제는 가능한 限 철폐되는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특정 이익집단이나 관료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봉사를 해서는 안된다.

그 밖에도 지금까지 과보호 받았거나 거대 독과점분야의 競爭性과 生産效率性 提高를 위해 국제화·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國內市場의 개방화가 요구되고 있다.

經濟的 自由의 實踐的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첫째, 시장진입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社會構成員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의무교육과 함께 無償教育이 확대·실시되고 社會階層間 교육비용의 격차가 없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간접교육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制度의 開發(보조금 지원 등)이 요구된다. 또한 점진적으로 어떤 형태의 교육이라도 이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원칙을 설정하되, 가계의 소득규모에 따라 부담정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가계 소득규모에 대한 구

체적인 파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소득규모에 따른 조세부담규모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節 分配的 平等의 실천적 목표에서 다시 詳述하기로 한다.

둘째, 경쟁적 시장질서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경쟁시장에 완전히 참가할 수 없는 병약자·연소자·노약자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인 최저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최저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사회의 공동체적 승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① 가능한 限, 社會扶助 대상자들의 自活能力, 自立能力을 높여 줌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시장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施惠的 支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社會扶助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들의 自助·自救努力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分配的 平等

統一韓國의 경제이념이 추구해야 할 두번째 가치는 經濟的 平等, 즉 衡平의 실현이다. 能力의 차이, 身分의 차이 또는 職位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자유의 강력한 밀받침이 되는 경제적 平等을 구현해야 한다. 이는 곧 경제적 安全保障, 公正한 分配, 經濟成長과 함께 產業民主主義 구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1) 平等의 概念¹⁴⁾

平等 또는 衡平(equity)이라는 말은 正義, 均衡, 公正 또는 公平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고대철학에서 현대철학에 이르는 수천년의 연구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의 정확한 概念을 정립하기 어렵다. 衡平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진 문제이면서도 인간의 主觀的 價値判斷에 근거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치체계나 기준이 확실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客觀的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衡平의 문제가 多元的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통적 인식을 어렵게 하며, 분배정의의 개념적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여진다.

衡平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道德的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存在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누구나 다 本質的으로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물질적 가치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社會 價値規範은 그와 같은 도덕적 가치에 의해서만 판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물질적 가치의 創出過程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競爭

14) 이와 관련된 논술은 郭泰元, 「경제성향과 사회형평」(서울: 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1)을 참조하였음.

市場 체제하에서 결정된 가격은 公正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쟁시장의 정당한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한 소득은 당연한 個人의 權利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 기준에 따르면 公正분배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能力과 努力에 대한 補償이 필히 正義로운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 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타고난 도덕적 가치가 同一하다는 인식과, 시장경제체제의 분배 메카니즘이 歪曲됨으로써 정의로운 분배를 ‘寄與’보다는 ‘必要’에 초점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분배 메카니즘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分配 메카니즘이 정당할 경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격차 또는 분배의 不均等은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정당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형평에 대한 관점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眺望 가능하다.

첫째, 平等主義다. 평등주의는 인간의 천부적 가치가 同等하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의 所得 또는 財産이 완전히 균등하게 분배되는 絶對的 平等主義가 가장 형평한 것이라는 주장과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는 相對的 平等主義가 존재한다.

절대적 평등의 기준으로는 厚生의 균등분배¹⁵⁾와 機會均等を 제시하고 있다. 상대적 평등주의는 商品平等主義(commodity egalitarianism)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 수백억씩 되는 재산을 갖는 것은 허용되지만 택지를 200평을 이상 소유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¹⁶⁾

지나친 平等主義의 추구는 오히려 생산의욕을 저해하여 전체적인 生産水準의 하락을 가져와 이른 바 '下向平準化'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둘째, 自由主義다. 형평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은 소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소유가 정당한 것이라면 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所有와 處分에 관한 자유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正義의 原則에 부합하는 방법을 통해 재화를 취득하였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가질 자격(권리)이 있다 또한 정당하게 가질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도 정당하게 가질 권리를 갖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로운 분배 상태란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自由主

15) 그러나 厚生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소득이나 富와 같이 개관적 측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弱點을 갖고 있다.

16) 이와 같은 제한적 입장에서의 平等主義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이 보장되는 것이 평등한 것이라는 結論에 도달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衣食住와 관련된 財貨와 用役, 흔히 생활필수품과 같은 것들은 균등하게 配分되어야 한다는 視角이다.

義의 관점의 분배론자들은 정부가 불필요하게 개인의 自由와 權利를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며, 국가는 최소한의 秩序와 安泰를 유지하는 夜警國家가 최선이라고 여기고 있다. 정부는 정당한 취득과 移轉의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데만 전념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가 보장된 상황에서 발생한 불균등을 시정하려는 노력 즉, 재분배정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 나름대로 說得力이 있어 사회 발전을 자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勞動意慾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배의 정의관에도 실천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아무리 과정이 正當하고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天賦의 能力이 다를 수 있으며, 疾病이나 事故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극단적인 자유주의 분배관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分配觀의 보다 큰 문제는 분배 절차 또는 분배의 메카니즘을 어떻게 규정하고 制度化하며 그 運用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과거의 분배메카니즘 결과로 나타난 오늘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財產權이나 個人的 自由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기득권을 보호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왜곡된 결과에 대해 하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셋째, 公利主義다. 공리주의적 분배는 社會的 滿足 또는 社會厚生이 극대화되게 하는 분배가 최선의 분배라고 보고 있다. 즉 인간 행복의 過多로서 분배정의를 판단하고 있어 개인의 權利나 自由가 등한시되는 측면이 있다.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이 개인의 행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사회후생의 증대를 위해서는 개인의 어떠한 權利侵害도 개의치 않는다는 全體主義的 結果가 야기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主觀的 滿足을 다른 개인의 만족과 비교하고 각 개인의 만족을 전부 단순 합계하여 사회전체 행복으로 대신하는 指標로 삼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¹⁷⁾

이상 지적한 分配的 平等概念으로부터 통일한국의 경제체제가 지향하는 분배적 평등의 개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平等에 대한 慾求는 尊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조건적 結果의 平等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公平分配는 그 자체로서 격차를 수반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17) 이와 관련하여 最少極大化 원칙을 들 수 있다. 최소극대화 원칙은 그 사회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의 厚生이 極大化되도록 하는 分配가 가장 정의로운 분배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모든 사람의 취향이 비슷한 사회라면 최소소득계층 중 제일 못사는 사람의 生活水準을 극대화시키는 再分配를 계속하다보면 특별한 制約이 없는 限, 완전한 均等分配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원칙을 위해서는 분배 메카니즘 또는 그 과정의 正當性 보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71), 郭泰元, 앞의 책, pp. 38~39에서 재인용.

둘째, 분배에 대한 개인의 權利와 自由가 중요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평등을 추구하는 개인의 권리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나 권리는 無限定한 것이 아님 만큼, 개인의 욕구나 권리의 상당한 讓步와 制限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분배가 이루어지는 機能的 조직(분배 메카니즘)의 정당화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 즉 分配規則을 공정하게 만들고 제도의 施行이 엄격해야 한다.

넷째, 分配正義의 추구가 지나쳐 生産意慾이 저하됨으로써 사회전체의 厚生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째, 분배문제의 관심이 低所得層 또는 사회적 脆弱階層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관점에 입각하여 아래에서는 統一韓國 경제체제의 平等을 어떤 방법을 통해 실천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2) 實踐的 目標

(가) 機會均等의 實現

인간의 삶은 그가 가진 資質과 機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는 인간의 자질을 결정할 수 없지만 그 기회는 결정할 수 있다. 平等의 原則은 우선 기회의 均等附與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회균등은 출발만 평등하게 한 채, 나머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¹⁸⁾

18) 다시 말해 기회균등을 출발만 균등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가장 빨리 뛰

기회균등은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出生이나 環境과 관계없이 같은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能力이 같지 않는 사람에게는 相異한 機會가 부여되어야 하나, 그것이 일생 동안 個人的 성공을 위한 機會面에서는 平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資質과는 상관없이 特權階級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월등히 좋은 기회를 가지게 하여서는 안된다. 平等은 특정인에게만 부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만 부여하지 않는 特權을 배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한 階級, 人種, 姓 또는 사회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待遇를 받아서는 안된다. 인간의 타고 난 不平等이 사회적 差別待遇의 根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어느 정도의 安樂과 尊嚴性을 지니고 살 수 있기에 충분할 만큼 분배받을 권리(生活賃金: living wage)를 받아야 하며, 최저수준의 文明生活(minimum culture living)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老齡과 疾病 또는 노동의 不可能에 상관없이 내일의 생계를 위한 끊임없는 걱정을 하지

는 사람이 이기도록 내버려두는 경주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리가 하나뿐인 사람도 자기를 위한 機會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知能이 극히 낮은 아이들을 모두 일반학교 교육을 받도록 동일한 機會를 마련한다는 것은 機會均等의 측면에서 볼 때 無意味하다. 低能兒들은 그들의 특수한 缺陷을 다룰 줄 아는 선생님이 있는 特殊學校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않고 살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社會保障은 사회적 평등을 保障하는 첫걸음이다.

(나) 公正賃金

平等은 공정한 분배를 의미하나 그것이 均等所得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公正분배에 따른 소득은 누구나 所得과 餘暇의 크기를 달리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平等한 機會가 주어질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공정한 분배를 公正한 賃金(just wage)으로 나타낼 수 있다. 公正은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性別, 人種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이유로 적게 받는 것을 배격하고 있다. 보다 큰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요하거나 오랜 노동시간이나 특수 기술을 요구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加外の 報酬를 지급받는 것은 지극히 公正한 일이다. 그러나 먼저 그와 같은 노동에 대해 모두 同意할 수 있는 공정한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즉 어떤 일이 다른 일 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얻을 價値가 있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사람들을 同一한 條件에서 서로 다른 階層으로 분열시키는 소득의 엄청난 차이이다.

이와 같은 불평등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서비스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 서비스는 ① 教育이나 衛生과 같은 일반 복지적 서비스 ② 개인간의 不平等을 보상하는 서비스 등 두 範疇로 나눌 수 있다. ①은 누구든지 언제든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예를 들어 부모의 生活形便이 어떠한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學校制度의 혜택을 받고, 醫療的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의료제도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商業的 타산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②의 서비스는 가계소득만으로 충분한 소득이 되지 못할 때 家族手當, 年金 등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支援을 의미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統一韓國 福祉經濟體制의 構築과 관련하여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다) 雇傭의 均等

고용의 均등은 勞動의 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용의 均등은 자기가 바라는 어떤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는 權利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한 천부적 자질도 없는 사람이 단순히 훌륭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훌륭한 職業을 가질 기회가 더 많거나, 더 만족스러운 職場生活를 영위할 수 있게 하여서는 고용균등의 의미가 없다. 또한 特定人에게는 어떤 종류의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반면,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肉體勞動 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용의 均등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단순히 어떠한

직업을 갖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適合한 職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첫째, 身分의 平等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력을 행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組織上의 位階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社會構成員은 누구나 자기의견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의견이 그 사람 자신의 일에 관한 한, 특히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을 規制해서는 안된다. 규제는 逆으로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고자 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強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평등에 대한 부인으로 비상시에만 인정될 수 있다.

셋째, 青年期 뿐만 아니라 老年期에도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訓練과 教育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 危險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가능한 限, 건전하고 유쾌한 勞動環境이 제공되어야 한다. 합당한 일수의 노동일과 충분한 휴일을 비롯한 직업보장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恣意的 해고조치는 감행되어서는 안된다.

(라) 産業 民主化

政治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權利를 투표로서 주장

할 수 있는 것처럼 산업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제도가 성립되어야 한다. 즉 경영자의 권력을 抑制하고 被傭者가 자기와 관계되는 일에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게 하는 산업 民主化가 실현되어야 한다.

산업 민주화를 위해서는 노사간의 共同協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사간의 공동협의를 통해 피용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身分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동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대접해야 한다.

공동협의를 피용자에게 하나의 권리로서 작용하고 企業運營과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직장에 훨씬 더 애착을 느껴 더 적극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또한 결정에 影響力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기업운영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협약에 있어서는 경영자의 결정이 垂直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分權化되고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 걸쳐 위임되는 것을 의미한다. 권한의 분산이 크면 클수록 결정에의 참여도는 그 만큼 더 높아진다. 그러나 기업운영과 관련된 決定에 현실적으로 모든 피용자가 즉각적으로 참여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운영 결정에의 참여를 위한 制度的 장치가 필요하다.¹⁹⁾

19) 산업 민주화를 위한 共同協議의 구체적인 實現方法은 독일의 勤勞者의

다. 福祉經濟體制 構築

統一韓國의 경제이념이 추구해야 할 세번째 가치는 福祉經濟體制的 구축이다. 복지경제체제는 自我를 실현시키고 사회의 安定性和 持續性 및 응집력을 강화하여 사회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복지경제체제 형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西歐先進國의 거의 공통된 이념으로서 이데올로기를 넘어 모든 경제체제가 추구해 나가야 할 국가경제의 목표다.

복지수준은 복지를 지향하는 社會 價値觀이나 이념, 정치·경제적인 역량에 달려 있다. 福祉水準의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력 발전에 따른 물질적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며, 社會的 衡平性이 보장된 분배구조와 사회보장 및 이와 병행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구축되어야 한다.

(1) 福祉經濟의 概念

복지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衣食住가 풍족하고(경제적 복지),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정신적 복지) 사회, 즉 사회복지가 실현된 福祉社會 내지 福祉國家²⁰⁾의 상태를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

경영참가제에서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충적 언급은 다음 절인 統一韓國의 理念的 基盤인 獨逸의 社會的 市場經濟 및 統一韓國의 經濟政策 부문에서 하기로 한다.

20) 福祉社會와 福祉國家는 일반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나 엄격한 의미에서

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社會福祉」는 쾌적한 상태, 개인의 신체적이며 물질적인 안녕과 관련된 상태 및 조건, 특히 건강, 행복, 번영과 같은 상태를 뜻하는 「福祉」와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즉 인간의 공동적인 행위체계를 의미하는 「社會」의 합성어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²¹⁾

그러나 사회복지의 의미는 그 접근방법에 따라 ① 사회복지를 사회보장의 일부로 보는 견해, ② 社會保障, 保健衛生, 勞動, 教育, 住宅 등의 생활과 관계되는 公共施策을 총괄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 ③ 생활에 관련되는 공공시책을 국민(개인)이 이용하고 개선하여 자신의 생활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게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견해 등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이해되고 있다. ①의 경우는 사회복지의 協議的 개념으로서 일본에서 주로 적용되는 데, 이 때 사회복지란 국가부조를 받고 있는자, 신체 장애자, 아동과 그 외의 원호 육성을 요하는 자가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필요한 생활지도,

는 복지사회가 하나의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틀이라고 한다면 복지국가는 구체적이고 固定化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지국가가 정치행정의 과제인데 비하여 복지사회는 국민의 意識態度에 관한 것으로서 복지국가의 社會的 基盤을 복지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즉 복지사회를 물에 비유한다면 복지국가는 물을 國家라고 하는 그릇에다 담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大邱大學校 社會福祉研究所 편, 「社會福祉事典」(서울: 경진사, 1993).

21) 金萬斗·韓惠卿, 「現代社會福祉概論」(서울: 홍익각, 1993), pp. 12~13.

更生保導와 기타 援護育成을 의미하고 있다. ②의 경우는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여러나라에서 볼 수 있는 社會福祉의 광의적 개념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는 전 국민이며 그 범위도 생활과 관계되는 사회적 서비스 전체에 확대되고 있다. ③은 UN의 정의로서 「사회복지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 및 여러제도와 全社會的 차원에서 사회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며 개인의 복지(personal welfare)증진을 위한 갖가지 사회적 서비스와 측면적 원조(enabling process)」를 의미하고 있다.²²⁾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경우 統一韓國 福祉經濟體制가 지향하는 사회복지는 “개인과 집단의 삶과 건강이 만족스러운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들의 조직적 체계”²³⁾에서 구할 수 있다. 이는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회구조가 붕괴되었을 때, 즉 家族制度和 市場經濟秩序가 어느 불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가 일시적으로 가족과 시장체계를 대신하는 「殘餘的 社會福祉(residual welfare)」가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서비스와 조직화된 체계의 「制度的 社會福祉(institutional welfare)」를 의미한다.

22) 大邱大學校 社會福祉研究所, 「社會福祉事典」.

23) Walter A. Friedländer & R. Z. Apte,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Engelwood Cliffs, N. J. : Prinice-Hall, 1980), p. 4.

(2) 實踐方向과 目標

上記 사회복지 이념에 부합하는 복지경제체제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福祉社會의 價値基準 定立

바람직한 복지국가의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적 원리와 공정의 원리에 부합되는 사회발전의 가치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서구 자본주의형 복지국가 이념과 모델을 우리의 전통과 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우리 민족이 살아가야 할 방향에 부합되게 再創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통일한국의 복지체제는 西歐型 복지국가의 일반성에 우리의 特殊性을 가미하는 복지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²⁴⁾

복지 내용은 주로 물질적인 개인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進一步하여 경제적 복지와 함께 정신적 복지를 충족시켜 주고 생활의 질을 높여주며 더 나아가서는 生活環境 개선과 같은 集團福祉도 높여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社會保障制度의 構築

복지국가 경제체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능적인 社會保障制度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여러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 기능에 따라 의료보장과 소득보장, 그 방법과 제

24)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본 연구와 같이 통일한국의 미래상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朴淳成,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을 참조.

도에 따라 사회보험(年金保險, 失業保險, 災害保險),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나뉘어진다.

의료보장은 의료서비스나 의료비 보장을 지칭하며, 넓게는 疾病時의 소득보장까지 포함하고 있다.

소득보장은 失業, 疾病, 災害에 의해 수입이 중단되거나 老齡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收入이 중단되었을 때,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국가의 사회정책에 따라 국민이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社會保險方式, 즉 피보험자가 보험분담금을 보험공동체(보험조합)에 납입하고 필요에 따라 적정액을 보상받는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社會秩序는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지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력에 의해 생계나 생활유지가 불가능한 자들의 最低生活를 국가가 재정지출을 통해 보호하는 일종의 救貧制度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자활능력이 상실되거나 중단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거나 영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본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개인적, 전문적,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키는 국가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개인 및 자선단체의 사회활동을 일컫는다.

사회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 특히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첫째, 저급 노동자들에 대한 技術教育이나 교육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보조금을 지급하며 둘째, 最低賃金制를 실시함으로써 노동 수요에 정부가 간섭하고 셋째, 실업자에 대한 情報提供, 職場·旋, 雇傭創出 등을 비롯한 생활대책을 마련하며 넷째,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의지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소득의 기능적 再分配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증과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이나 무능력자, 노약자 및 영세 여성가장 등에 대해서는 生活補助金이나 기타 보조금을 생활현실에 맞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다) 環境保全과 生活環境 改善

복지사회는 경제발전 및 民主主義의 발달이 이에 못지 않는 社會文化가 발달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고도성장이 초래한 인플레이션, 公害와 環境破壞, 資源의 枯竭, 인구폭발, 급속한 도시화, 지역사회나 가족의 기능저하, 분업의 고도화 등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마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의 해결이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새로운 政策과제 내지 목표로서 설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의 정책목표는 “環境이 지탱 가능한 開發(sustainable development)” 방향에 부응하면서 미래의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國民總生産(GNP)를 비롯한 경제성장 指標들이 생활의 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환경이 국

민복지와 경제성장의 평가에 포함되고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選好度가 적절하게 반영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환경과 경제를 유기적 연관 속에서 가시화하기 위해 국민소득 회계제도에 환경자본 계정을 도입하는 새로운 경제 후생지표인 이른바 ‘綠色 GNP’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각종 거시경제 지표의 목표치 설정과 함께 國民福祉에 영향을 미치는 環境汚染의 기준을 제시하고, 제시된 기준은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까지 성장 우선적 產業政策 및 제반제도들을 새로운 가치체계와 부합되는 정책 및 제도로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國土運用計劃, 產業開發, 대규모 공공사업, 住宅, 農業, 產業構造調整 등에 관한 최고위 정책입안에서부터 기업의 생산, 유통,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環境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사전 대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理念的 基盤

전술한 기본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는 내용면에서 獨逸의 “社會的 市場經濟”와 日本의 “協議主義的 市場經濟”에 가까운 類型이다. 經濟的 自由와 平等面에서는 “社會的 市場經濟”를, 복지사회 구현 수단인 經濟發展에 있어

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協議主義的 市場經濟”와 부합되고 있다. “社會的 市場經濟”와 “協議主義的 市場經濟”는 현대 자본주의의 주도적 모델로서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相互補完的 關係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社會的 市場經濟”와 “協議主義的 市場經濟”의 개념과 내용을 통일한국 경제체제의 구체화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가. 社會的 市場經濟

(1) 社會的 市場經濟의 概念

「社會的 市場經濟(soziale Marktwirtschaft)」는 1948년 6월 독일이 화폐개혁(Währungsreform)을 실시한 이후 경제질서의 기본이념으로 채택, 전후 서독경제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²⁵⁾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責任을 진 市場經濟(sozial verantwortet Marktwirtschaft), 즉 “시장경제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강조함과 동시에 단순한 自由放任主義의 시장경제와 일선을 긋기 위한 修飾”²⁶⁾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

25) 이의 개념구성은 1946년 Alfred Müller Armack이었으며 현실화시킨 것은 Adenauer 정부당시의 Ludwig Erhard 경제성장관(1949~1963)이었다. 이론적 개념 도입 및 정교성을 추구한 것은 경제부장관(1965~1972)을 역임한 사회민주당의 Karl Schiller 교수였다. A. Müller Armack, *Wirtschaftslenkung und Marktwirtschaft* (Hamburg: 1946).

26) 이는 A. Müller Armack의 정의로써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A. Müller Armack, *op. cit.*을 참조할 것.

적 시장경제」를 規制된 자유시장경제, 「社會意識에 강한 자유 시장경제」 또는 「시장에서의 자유와 사회적 衡平을 결합시킨 경제체제」로 지칭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²⁷⁾

사회적 시장경제의 哲學的 思想은 시장질서의 경제학을 지향한 프라이부르크(Freiburg)학과 사상과 가톨릭교의 社會倫理²⁸⁾에서 비롯되었다.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창시자는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1891~1950)으로서 그는 근대 英·美經濟學의 「자유주의」사상을 독일적 환경에 맞추어 해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秩序自由主義(Ordo-Liberalismus)」를 개념화하였다. 그는 「국가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자유방임(laissez faire)적 시장경제를 초월하여 시장에서 個人, 企業 그리고 諸團體 등 개별 경제주체의 경쟁적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自由市場이라도 그것이 작동하게 될 수 있는 틀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틀의 창출은 국가의 책임에 있다는 것이다.²⁹⁾

27)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안두순, 「사회적 시장경제 -독일경제정책의 체제적 기본틀과 질서정책의 내용 -안두순 편, 「독일의 경제정책 -강한 정부와 강한 경제간의 조화」(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1994) 참조.

28) 근대적인 기독교적 윤리에 의하면 노동자는 임금만 받을 자격이 있는 일꾼일 뿐만 아니라, 고용자가 그의 자본과 경영을 통해서 기업에 기여하는 바로 그 만큼 노동자도 자신의 노동을 통해 기업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사회보장과 기업운영에 참가하는 어떤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역설한다. 노사 공동관리와 공동상담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바로 이 이론에 의한 것이다.

29) 市場經濟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게 다음 세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시장에서의 自由競爭은 산업의 독과점과 經濟力을 집중시켜 獨寡占 기업들을 출현시키게 된다. 이들 기업은 막대한 경제력

(2) 「社會的 市場經濟」와 經濟的 自由

「사회적 시장경제」는 신자유주의의 實現例이다.³⁰⁾

新自由主義를 표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는 中央管理를 거부하여 나치즘의 강권적 국민 사회주의(national Sozialismus)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 케인즈적 財政·金融政策도 거부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대부분은 인간 本然의 자유에 反할 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이 중앙당국이 맡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³¹⁾

뿐만 아니라 政治的 社會的 壓力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자유와 利益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로써 産業社會에는 새로운 형태의 '奴隸制度'를 잉태함으로써 경제의 效率性과 사회적 進步를 저지한다. 둘째, 시장 독점이 정부에 의해 排除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창출되는 소득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분배되는데, 이 경우 能力이 큰 자는 보다 큰 소득과 재산을 蓄積시킬 수 있는 반면, 능력이 부족한 자는 生存에 필요한 物質的 욕구조차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市場經濟는 분배에 있어 不平等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介入을 통해 모든 사람이 업적에 따라 公正한 소득을 분배받게 되는 일반적 原則을 만들되, 능력이 모자라는 자에 대해서는 社會保障制度를 통한 지원으로 분배적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國防, 教育, 道路, 港灣, 環境保護 등과 같은 社會間接施設의 생산은 시장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30) 신자유주의의 思潮를 구성한 것은 프라이브르크학파였으며 그 중심인물은 뢰푸케(W. Röpke), 뵘(F. Böhm), 오이켄(W. Eucken) 등이었다. 신자유주의 思潮는 제1, 2차 대전중 확대된 국가간섭에 대한 비판운동에 그 紀元을 찾고 있다. 1947년 이들 학파에 속한 학자들은 스위스의 몽페르랑에 모여 각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을 糾合하였다. 1948년 기관지 ORDO가 創刊되었다. 서독의 경제상 에르하르트(L. Erhard)는 신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이후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基調하에 經濟建設이 추진하였다.

31) 신자유주의는 공유와 중앙관리의 社會主義가 自由資本主義에서 나타나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시장경제」가 自由放任에 偏重된 접근을 보이는 것은 전혀 아니다. 자유방임은 경쟁질서를 해치고 獨占化로 진전됨으로써 소규모 기업의 생산기반을 잃게 되고 浮動하는 群衆을 量産시킴으로써, 終局에는 안정을 주로 국가에서 구할 수 밖에 없는 大衆心理를 자아내게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中央管理體制나 자유방임과는 다른 제3의 길인 경제적 자유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적 자유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과 유효한 가격체제가 자동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쟁시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經濟·社會的 및 自然的인 제조건에 대한 강력한 시책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국가기능 증대나 이익집단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한 경쟁시장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장 메카니즘의 증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시장경제질서를 오이켄(W. Eucken)은 秩序自由主義에 입각한 경쟁질서라고 부르고 있다.³²⁾

현상처럼 경제의 집중화와 프롤레타리아화를 확대시키는 사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는 私的 集中의 公的 集中으로의 전환, 대다수에 대한 소유의 수탈에서 전 인민에 대한 所有의 收奪로의 일반화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기대되는 생활의 안정도 전 생활을 中央當局에 맡긴 노예의 安定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3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이켄은 技術進歩에 따른 경제력 集中化나 자본 독점화는 그 대부분이 시장세력지배를 방임하거나 잘못된 시책으로부터 온 것이며 기술진보가 반드시 경쟁제한적으로 작용한다고 만든 보지 않는

秩序自由主義的 경쟁질서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사람과 경제가 가지는 本性에 있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인격이 그 본성이어야 하며 인격의 본바탕은 자율에 있다. 자율성은 인간의 실존을 이루는 자유에 기초하고 있다. 자유스런 생활이 형성되지 않고는 인격적 인간은 기대할 수 없으며 참다운 안정을 구할 수도 없다. 자유가 없으면 안정도 불가능하다. 經濟秩序도 경제의 자연논리에 맞아야 한다. 경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소비가 생산을 유도하며, 재화의 상대적 稀少性이 정확히 반영됨으로써 자원이나 노동력이 공간적·시간적으로 가장 적정하게 배분되는 것이다. 이는 有效競爭과 有效價格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 시장경제체제에서 만이 가능하다.

秩序自由主義的 경쟁질서의 두번째 근거는 질서의 상호의존성에 있다. 경제는 경제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간의 질서, 즉 경제 제부문과 경제전체의 질서가 상호 의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와 사회, 정치분야 등의 질서간에서도 불가분의 相互 依存關係가 성립되고 있다. 경제를 중앙관리하면서 다른 영역에서 자유를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람이 자유롭지 않으면 경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개개의 經濟施策은 고립적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항상 경제전체와 사회전체 질서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 오히려 競爭의 요소를 강화시키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서 技術進步는 ①交通·通信技術의 발달을 통해 지역적 독점을 무너뜨리는 구실을 하며 ②새로운 商品을 개발을 유도하며 ③産業設備 도입을 促進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W. Eucken, *op. cit.*

그림에도 불구하고 競爭秩序는 스스로 존립하고 자발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는 자체적인 부패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임하면 사회전체를 해치게 된다. 시장경제의 경쟁질서는 '재배식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경쟁질서는 意識的으로 형성되어야 할 질서다.

경쟁질서를 형성하는 주체는 자유와 자기책임의 自律的 태도가 기초로 된 인간과 정부이다. 인간은 경쟁질서의 묘목에 해당하며 국가는 施肥나 除草 등의 손질에 해당된다.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그 법적 골격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제조건의 형성·유지가 필요하며 개개의 집단이해를 초월한 국가권위와 시책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제적 자유 개념은 新社會主義³³⁾에도 사상적 뿌리를 내리고 있다. 신사회주의란 오늘날 서구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사회주의사상의 총칭이며 「民主社會主義」

33) 신사회주의는 영국을 중심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세력으로 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해 있다. 그러나 그 실천적 주장의 명확성, 체계성에 관해서는 아직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서독에서는 북유럽과 영국의 전통을 흡수하면서 스스로 종래의 마르크스의 지배를 벗어나 신사회주의의 이론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며 그 맹아는 바이말시대의 말기에서 찾을 수 있다. 신사회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일대학파를 형성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가는 바우어(O. Bauer), 하이만(E. Heimann), 오르트립(H. D. Ortlieb), 쉘러(K. Schiller), 다렌도르프(R. Dahrendorf) 등이다. 이 들 중에는 함부르크대학에 관계하는 사람이 많으며 오르트립의 편집 아래 그 이론적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함부르크 연보(Hamburger Jahrbuch fu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spolitik)를 1956년부터 발간해오고 있어 '함부르크학파'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또는 「自由社會主義」라고 불리워지고도 있다.³⁴⁾

신사회주의의 특징은 첫째, 歷史決定論을 否定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주의와는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³⁵⁾ 마르크스가 서술한 사회주의상과 그 실현방법, 마르크스주의자에 의한 사회주의의 전개에 관해서도 명백한 거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대신 제도적인 변혁과 道德的·教育的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조직의 원리로서가 아니라 이념이자 시대적 과제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급진적 혁명노선을 폐기하고 점진적 사회개혁을 중시하며, 계급 적대주의와 계급 투쟁방식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다고 보고 階級鬭爭이 아닌 사회적 파트너쉽(partnership)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의 이익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국민적 이익의 입장에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4) 신사회주의 이념이 서독의 경제 정책운영에 근간이 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一群의 사회주의자가 불세비즘에 반대하여 인간의 自由와 人格의 존중을 강조한데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자유사회주의'나 '자유를 사랑하는 사회주의'라는 명칭이 만들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체험과 독일의 동서분열을 계기로 신사회주의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실천적으로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獨逸社會民主黨(SPD)과 손을 잡고, 第2次 世界大戰後의 SPD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SPD가 정권을 잡은 이듬해, 서독 經濟體制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안정성장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이 制定되었는데 여기에도 참여했다.

35) 그렇다고 마르크스 이론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비판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있다.

둘째, 계급투쟁이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부정이다. 일체의 독재는 부정되며 의회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³⁶⁾ 국민정당의 이념과 議會民主主義의 방식이 견지되고 있다.

셋째, 生産手段의 공유화와 경제의 전면적인 계획화를 배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사회개혁은 오히려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전면 계획화는 필연적으로 거대한 權力集中을 야기시켜 거대한 사기업에 의한 세력행사 이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사회주의에 있어 사회주의는 어디까지나 과제에 그치며 궁극적인 完成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3) 社會的 市場經濟의 經濟政策과 分配的 平等

사회적 시장경제는 아래에 제시하는 경쟁질서정책과 경제과정정책 및 공동결정을 통한 경제민주화가 달성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가) 競爭秩序政策³⁷⁾

36) 계급적대주의의 폐기는 이미 1946년에 슈마하 당수 아래 재건 SPD의 기본방침(Bad Godesberg 강령)으로 확인되어 그 이후 SPD 활동을 규제하게 되었다. SPD는 사회주의는 필요한 정치투쟁을 계급투쟁으로서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의해 실현되고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이념의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의해 노동자의 계급정당으로부터 국민정당으로 탈피하였다.

37) 여기에서는 오이켄의 경쟁질서의 구성원칙과 규제원칙을 통일한국의 경제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분배적 평등과 연관시켜 논의한다. W. Eucken, *op. cit.* 및 안두순, 같은 논문, pp. 19~22 참조.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쟁질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원칙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완전경쟁에 따른 재화와 용역시장에서의 가격체계 구축이다. 완전경쟁이란 어느 시장에서도 需要者나 供給者의 어느 한쪽도 자신에게 유리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은 市場價格의 형성을 위해서는 價格凍結이나 수입규제 같은 국가의 가격개입이 억제되어야 한다.³⁸⁾

둘째, 완전경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안정적인 通貨政策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物價上昇이나 물가하락을 방지하고 화폐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市場進入과 離脫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진입장벽(예: 수입금지, 투자금지, 카르텔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생산수단에 대한 私的所有와 경제활동에 있어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이 개별 경제주체들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목적으로 체결되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경제정책은 장단기적으로 一貫性을 유지하여야 한

38) 다시 말해 경쟁시장에서 유효한 價格形成, 즉 완전경쟁하에서의 有效 가격체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反獨占 정책이 핵심적 과제이다. 독점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경제에 害惡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예를 들어 가스공급의 지역적 독점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必要惡으로서 개별적인 독점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 기업은 항상 위험과 상황변화에 직면해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이 경제정책의 非一貫性으로 말미암아 확대되거나 불확실하게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제에서는 경쟁 자체가 社會政策的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된다. 국가의 개입이 실현되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獨占이 발생하는 경우다. 그러나 독점규제는 시장권력이 형성되는 경향을 약화시키거나 기존의 獨占的 시장권력을 解體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둘째, 소득분배와 관련된 경우다. 시장경제에서의 소득분배는 사회적으로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事後的인 정책을 통한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공급이 가격상승과 함께 감소하고 가격하락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非正常的 시장에서는 정부의 가격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사적 경제주체가 유발시킨 비용을 당사자가 아닌 타인 또는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전가시킬 경우(環境汚染 등의 '外部費用' 발생), 국가개입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볼 때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쟁질서는 시장경제의 기본골격을 형성하고, 시장경제의 機能이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정부 개입에 대한 원칙 수립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쟁질서정책은 유효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산분배 정책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는 경쟁시장이 經濟的 의사결정의 分散的 기능이 유지될 때 형성될 수 있으며, 경제결정의 분산은 사유재산제에 기초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은 개개인의 獨立과 안정을 뒷받침하고 국가의 불필요한 권력개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³⁹⁾ 또한 시장기구를 통한 分配만으로는 所得과 所有의 격차의 발생과 그 확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有效競爭市場의 유지를 위해서는 資產分配政策이 필수적이다.

(나) 經濟過程政策

사회적 시장경제에서는 경제의 흐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개입하는 經濟過程政策(Wirtschaftsprozesspolitik)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경과정책은 거시적 경제정책을 의미하며 국민예산을 중심으로 國民投資, 所得分配, 國家支出 등을 확정시키고 完全雇用, 經濟成長,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균형 등 경제정책적 제목표 달성과 교육조직이나 건강제도의 정비, 社會的 不均衡 시정 및 산업부문 및 지역적인 구조조정정책(Structurpolitik)

39) 이와 관련 전후 서독에서는 노동자의 재산형성정책(Vermögensbildungspolitik)이 추진되었으며 현재에도 그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즉 노동자들에 대해 財產形成貯蓄을 유도, 使用者가 일정액의 基金을 납부 하며 정부도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特別獎勵金을 지급하고 있다.

의 추진을 들 수 있다.⁴⁰⁾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總投資에 대한 유도와 함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상의 정비(저축장려, 조세제도의 단순화, 지역단체간의 재정조정 등)가 이루어져야 한다.⁴¹⁾ 그 밖에도 산업간, 도시간, 지역간 인구배치의 適正化나 社會間接資本 정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중요시되고 있다.⁴²⁾

경제경과정책에서 물가안정과 높은 수준의 고용은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용구조상의 不均衡을 나타내고 있는 요인에 대한 질서정책적 수단을 통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경기정책이나 고용정책은 어디까지나 긴급상태

40) 이와 같은 정책을 독일은 1967년 제정한 「경제안정법」(Stabilitätsgesetz)에 반영하였는데, 이 법 제1조에서 聯邦 및 州政府는 시장경제의 범위내에서 物價水準의 안정, 높은 고용수준 및 대외경제적 균형을 지속적이고 적정한 경제성장하에서 달성하도록 措置를 취할 의무를 밝히고 있다.

41) 이의 구체화된 조치로서는 1967년 서독에서의 키싱어(K. G. Kissinger) 대연립정권 아래에서 제정된 경제안정성장촉진법(Gesetz zur Foe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을 들 수 있다.

42) 經過政策에 대해서 독일은 일반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띠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별 경제과정을 유도하는 역할이 국가에 의한 것이 아닌 시장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경제과정에서의 개입이 타부문의 간섭을 초래함으로써 전면적인 관리로 이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케인즈주의적인 景氣政策이나 고용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바, 금융·재정수단을 통한 국가재정적 차원의 完全雇用政策은 투자와 가격기능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악화시켜 중앙관리체제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본질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金光洙, 「比較經濟體制論」(서울: 究旻社, 1994), p. 280.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은 ①國民經濟를 형성하는 각 산업간의 유기적 연관성이 최대한으로 확보되며 ②산업간의 균형적 발전이 도모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산업에 존재하는 傳統部門과 근대부문간의 이중적 구조는 각 산업간에 균형적 발전이 전개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均衡的 發展은 산업구조면에서 농업과 공업간 또는 消費財 工業과 生産財 工業間の 문제 뿐만 아니라 산업조직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기업과 수출기업간의 문제도 그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한편, 통일후 북한지역의 신속한 産業化와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체계적인 경제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경제계획은 지난 60대 이후 남한에서 실시해 왔던 經濟開發計劃을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 경제계획의 기본목표로서는 經濟成長과 근대화의 추진, 부문별·산업별·지역별 생산구조 형성, 完全雇用, 안정 및 國際收支의 균형유지, 사회간접시설 투자 등이 될 것이며, 임금과 가격결정에 정부가 영향력을 발휘,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남북한을 연계하는 産業構造調整的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그러나 계획화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에 의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職業選擇의 自由--가 침해 당하는 경우, 계획화의 더 이상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즉 계획화가

전체주의적 사회를 실현하는 도구로써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福祉國家를 실현하는 계획화는 이러한 전면적인 계획화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시장기구의 기반위에 계획기구를 도입한 것이며, 이는 議會民主主義, 자유기업, 소비자선택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자유를 유지하려는 것과 대립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계획화의 기본적인 성격은 지시적 또는 교육적인 데 있어야 할 것이다. 計劃化의 목표설정에서 있어 국민의 의사가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 민간의 諸集團 및 전문인의 폭넓은 참여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위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社會保障制度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첫째, 사회보험을 확대·실시하고 노동력 상실자에게는 國家扶助 지출을 증대시켜야 한다. 정부의 사회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高所得層의 소득이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즉 소득 재분배적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社會福祉事業의 실시는 그 급부가 시설이나 서어비스 등 현물에 의한 것이 많고, 특수 환경에 처해 있는 계층의 생활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보장과는 구분되나, 그 본질이 국민의 最低生活 확보에 있는 것이므로 보다 강력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과세에 의한 所得再分配가 강화되어야 한다. 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격차를 해소하는데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므로 세율의 累進度를 강화하고, 재산소득에 대한 重課稅와 함께 負의 所得

稅⁴⁾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셋째,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노동 관계 보장법, 累進稅의 실시 및 공공의료기관 및 大衆保健計劃, 무상·의무교육제도, 공공주택보급, 주택금융 기타 환경보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납세자와 복지수혜자의 근로의욕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초기부터 社會福祉 국가의료제도와 대학까지의 無償敎育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함께, 통일한국의 재정으로도 부담하기 어려운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民族經濟와 世界經濟와의 調和를 이루는 것이다.

외국과의 단절속에서 독립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韓國經濟가 완전한 개방경제를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립 민족경제의 이념에서 볼 때 대내적으로는 산업구조의 二重性을 청산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의존성을 탈피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자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업의 외연적 성장은 지양되어야 하며 가능한 限, 純粹 民族資本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內包的 성장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⁵⁾ 이를 위해서는 민족자

4) 부(negative)의 소득세를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rB$ 단, Y 는 기본소득 또는 보장소득, r 은 부의 소득세율, B 는 분기점의 소득이다. 기본소득이란 최소한의 보장소득을 뜻하며, 수취소득은 실제로 영수한 금액이다.

5) 임종철,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와 산업구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 94.

본의 축적과 이의 동원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開發·育成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 이윤중 일정 비율이 製品의 질을 향상시키고 新製品 개발 등 技術革新을 위해 재투자 되도록 誘導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민족자본이 축적되고 技術革新에 의해 企業 規模가 확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⁶⁾ 기업을 지배하는 주체는 자본가로부터 엄격히 분리된 自律的인 집단이 됨으로써 社會福祉 증진이 이윤추구에 선행하는 환경이 造成될 수 있을 것이다.

2. 北韓 經濟體制 轉換

통일후 남북한이 單一化된 경제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체제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체제는 남한의 統一政策이 비록 「화해·협력」과 「南北聯合」을 거쳐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점진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남북한간 정치적인 의미에서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전환 될 것이다. 왜냐 하면 남북연합이라는 통일단계가 國家聯合 (Conferation)의 성격을 띠게 될 것⁷⁾이므로 남북연합 종료시까지는 남북한이 각각 ‘複數憲法’을 견지하게 됨으로써 서로 상이한 經濟體制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⁸⁾

6) 변형운, “민족혁명형 개발정책으로의 전환,” 「정경연구」(1971. 12), p.41.

7) 남북연합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金明基, “南北聯合의 法的 性格,” 明知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論叢」, 제6집, pp. 35ff. 참조

8) 물론 남북간 화해·협력과 南北聯合期 동안 북한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점

가. 經濟體制轉換 對象과 內容

경제체제전환이란 “한정된 지역(국가)에서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경제질서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규의 적용이 無效化되고, 다른 경제적 질서나 법규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⁹⁾으로 경제적 질서나 질서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기구가 전혀 새로운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체제전환은 상이한 두 체제가 소유형태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체제 根本原則을 변화시키지 않고 양 체제가 유사한 변화를 하여 상대체제의 긍정적인 면을 취하는 體制接近이나 기존 경제체제의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體制改革과는 다르다.¹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은 북한 경제를 이루는 제도적인 기구의 전환을 지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法的·制度的 장치의 도입·시행됨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 가격의 자유화다. 가격자유화는 경쟁시장을 성립시키

진적인 經濟改革이 이루어짐으로써 부분적인 시장경제요소, 즉 제한된 품목이나 분야에서 價格自由化가 이루어지고 토지사유화 및 企業民營化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으나, 북한경제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經濟體制轉換과 사회제도상의 統合은 統一國家가 형성된 이후 이루어질 것이다.

9) 경제체제전환의 개념과 요건에 대해서는 金瑩允, “社會主義 體制轉換과 南北韓 統合,” 「통일연구논총」, 제3권 2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207~208.

10) 위의 논문, p. 208.

기 위한 필수적이며 최우선적 조치이다. 가격이 競爭市場을 통해 자유롭게 형성되어야만 재화의 需給이 조절될 수 있으며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¹¹⁾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시장이탈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시장활동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生産者나 消費者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시장활동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생산자나 소비자 자신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제도가 성립되어야 하며, 사유재산제도가 효율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과 운영이 국가간섭을 벗어나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 경제체제전환은 북한에서의 토지 사유화와 기업민영화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海外貿易과 資本移動이 국가독점으로부터 해제되어 개별 경제주체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대외경제의 개방이 실현되어야 한다.¹²⁾

그 밖에도 북한의 貨幣 및 金融制度上的 전환과 함께 남한

11)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價格自由化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가격자유화를 산업 전부분에 걸쳐 즉시 실시할 것인지, 일부분에서 시작하여 漸進的인 방법에 의해 전부분으로 擴大·實施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져야 하는 데 이는 價格自由化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구동독이나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大量失業이나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함은 물론, 그 정도면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12) 그러나 경제의 전분야를 일시에 開放하고 화폐의 태환성을 갖게 하는 것은 産業競爭力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오히려 企業倒産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통일정부가 幼稚産業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交易政策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의 사회복지제도 통합이 필요하다.¹³⁾

나. 經濟體制轉換 方法

체제 전환 방법에는 급진적 전환 방법, 즉 衝擊療法的인 방법과 漸進的인 전환방법이 있다.

衝擊療法的 方法(Schocktherapie)이란 “시장경제질서와 자유민주주의적인 政治秩序 수립에 필요한 주요 기본정책들이 한꺼번에 내려지고 동시에 시행됨으로써 사회주의체제가 전환 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⁴⁾ 漸進的인 방법(Gradualismus)은 중앙계획경제가 단계적인 개혁을 통해 체제전환을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사회체제적 기초(예를 들어 中央執權化, 중앙통제계획, 國有財產權, 對外經濟의 獨占)가 장기간의 과정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가지 방법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體制轉換에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둘 다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동독의 체제전환은 동서독 통일 당시 주어졌던 정치·사회적인 환경에 의해 급진적인 전환을 이루었으나 바로 그 때문에 통일후 많은 後遺症을 겪고 있으며, 舊蘇聯을 비롯한 동유럽의 일부국가들은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

13) 이에 대해서는 統一韓國의 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는 朴淳成,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14) Uwe Jens, “Schocktherapie oder Gradualismus,” HWWA-Wirtschaftsforschung, *Wirtschaftsdienst* 1993/III (Hamburg: 1993), p. 159.

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법을 택하든 체제전환을 통해 市場經濟의 기능이 최대한 빠르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체제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인 부담과 副作用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공통된 목표이다.

시장경제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장경제제도를 통한 經濟成長과 물가안정 및 완전고용과 國際收支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며, 경제·사회적인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것은 체제전환 목표를 최소한의 재정적인 부담과 사회적 費用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¹⁵⁾

결론적으로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資本主義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①양체제간 통합이 정치적인 면에서 가시화 된 후, ②북한의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기존체제에 충격을 가하는 방법을 통해 경제부문 전체의 自由化를 꾀하고 ③일정기간 동안 북한 경제체제가 市場經濟體制로서의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 ④경제지역의 單一化를 이루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¹⁶⁾

이를 좀 더 단계별로 나누어 구체화하면,

첫번째 단계에서는 북한 경제전반에 걸쳐 체제전환의 내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①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

15) 충격요법적 방법과 점진적 방법에 대한 問題點과 論爭에 대해서는 金瑩允, 같은 논문, pp. 212~218 참조.

16) 金瑩允, “社會主義 體制轉換과 南北韓 統合.”

과 관련된 法規의 新設이나 變更을 통하여 전환될 경제의 未來像을 확립하고,¹⁷⁾ ②국가가 가격결정에 개입하여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경쟁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능적인 自由價格體系를 구축하며,¹⁸⁾ ③이윤동기를 부여하고, 기업활동의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화와 生産手段의 거래 및 처분의 자유화 조치를 실시한다.¹⁹⁾ ④市場 參與와 離脫, 직업선택과 기업설립 및 영업활동의 자유와 계약체결의 자유를 保障한다. ⑤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金融制度를 확립한다. 위와 같은 조치들은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내에 병행·추진되게 하는 것이 체제전환을 위해 효율적임을 체제전환 사례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²⁰⁾

17) 이와 관련하여 Hedtkamp는 정신적인 면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체제전환을 위한 確固하고 분명한 意志가 필수적이며 이와 같은 의지를 체제전환을 위한 정신적인 Infrastructure로써 언급하고 있다. G. Hedtkamp, *Probleme beim bergang von der Planwirtschaft zur Marktwirtschaft aus theoretischer Sicht*, Wissenschaftliches Kolloquium 5~6. April 1990, München, ifo Institut.

18) 그러나 기본 소비제품의 가격은 가격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켜 일정 기간동안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띠므로써 시장가격과 실물가격의 차이를 補填하며 그 후 소득이 증가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그러나 國家基幹産業(선박, 비료, 화학, 자동차, 철강 등)은 건설초기에 요구되는 대규모 자본투자의 必要性和 運用의 效率性を 고려, 일정 기간동안 國營企業體로 유지하되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企業經營形態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앞의 논문.

둘째 단계에서는, 시장기능과 가격결정 메카니즘을 확보하고 국제시장에서의 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對外貿易을 자유화한다. 여기에는 ①대외경제부문에 있어 먼저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실시한다.²¹⁾ ②자본이동의 자유화 이후 財貨나 用役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도록 한다.²²⁾ 이 경우 국외생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가, 이로 인한 국내 생산감소와 고용수준의 감소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保護貿易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³⁾

세번째 단계에서는 북한 경제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각종 補完策을 적용한다. ①화폐, 금융, 국가재정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여 실물경제시장과 화폐시장이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체제전환의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두어 통화를 緊縮的으로 운용, 통

21)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화폐가치가 평가절상된 형태의 고정환율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購買力評價에 따른 교환비율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Walter Eucken, *Grundsätze der Wirtschaftspolitik*, 6. Aufl. (Tübingen: 1952~1990); Deutsche Bundesbank, *Die Bilanz des Zahlungsverkehrs der Bundesrepublik, Monatsbericht* (Frankfurt: 1990), p. 20.

22) Edwards는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資本市場의 자유화와 재화 및 용역시장의 開放보다 앞서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S. Edwards, "Order of Liberalization of the Balance of Payments: Should the Current Account Be Opened up first?," The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710, 1985.

23) 이에 대해서는 幼稚産業의 발전을 위한 보호관세를 주창한 Friedrich List와의 견해와 일치한다. Friedrich List,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Ökonomie* (First Publication 1841), (Tübingen: 1959).

화가치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②각종 세제를 통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③사회보장제도의 구축,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및 개선, 所得分配構造의 개선, 독점기업의 관리, 각종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및 연구소를 설립, 기업의 合理化와 生産性 향상을 위한 활동 및 인력개발 지원, 市場失敗(market failure)에 대한 보완적 조치를 강구한다. 더 나아가 각종 公共材(public goods, 예: 교육, 신문 방송, 위생, 문화 등과 관련되는 기관의 설립과 행사)를 확충하여 市場機能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북한은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 완전한 經濟·社會 및 貨幣統合을 이루기 전, 위에서 언급한 두번째 단계까지는 경제적으로 각각 독립된 지역을 확보·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후 남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同質性을 확보한 이후, 남북한 경제지역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다. 북한지역에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남한은 세번째 단계에서 이를 북한과의 경제·사회적 통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²⁴⁾

북한 社會主義 경제체제가 남한의 資本主義 시장경제체제와 실질적으로 통합되는 세번째 단계에서 북한지역이 당면하게

24) 물론, 체제전환이 위의 방식보다는 狀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전환의 原則的인 방법을 마련하고 상황발생에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效率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세번째 단계에서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對備하는 것도 요구된다.

될 주요 경제적 문제로는 ① 남북한 경제전체를 고려한 경제 구조 調整問題와 ② 북한경제가 시장경제하에서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일 것이다.

남북한 경제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될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지역에서의 失業者 증가이다.

기존의 북한경제가 시장경제하에서 그 수준 제고를 위한 실천적 과제와 관련된 문제로는 ①落後된 社會間接施設의 확충, ②生産性 향상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 ③파괴된 環境再建 등일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통일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경제·사회 및 통화통합을 이루기 전인 남북연합단계부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남북한간 제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 前에 社會間接施設에 대한 투자 분야와 費用調達, 資源移轉, 換率調整, 企業破産에 따른 失業者 문제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3. 南北韓 經濟體制 單一化

가. 北韓地域 政策的 課題

북한 경제체제 전환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²⁵⁾

25) 金瑩允, “社會主義 體制轉換과 南北韓 統合.”

첫째, 앞서 언급한 첫번째 단계에서 실시하는 조치를 통해 북한 경제체제에 충격적인 방법을 통하여 빠른 시간내에 市場經濟體制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앞서 고찰한 체제전환의 효율적인 추진과 북한지역에 신속한 投資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企業民營化와 土地私有化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財產權 소유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야 시장경제질서가 비교적 더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다.²⁶⁾

북한의 재산권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 경제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도하면서 生産手段의 국가소유에 집착하여 체제전환을 더디게 하여서는 體制轉換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⁷⁾

국가소유는 계획경제의 법률적 표현이고 관료지배의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활성화는 각 경제주체의 경제적 자유, 즉 私的自治(private autonomy)의 활성화를 전제하고 있다. 사적 자치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사유제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活性化는 사유제없이 불

26) 북한 국영기업의 民營化와 관련하여 경과조치로서 북한 비농업 國營企業에 대해서는 통일과 동시에 전종업원의 가구인원수 비례 均等한 지분으로 분배하여 사유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차후 기업민영화에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방법의 적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방법면에서 상당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한 國營企業의 자산분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임종철, “統一韓國의 經濟體制와 産業構造,” pp. 98~99 참조.

27) 박세일, 「體制比較의 經濟學」.

가능하다. 다시 말해 사적 자치의 법률적 기초는 사유라는 소유제도이기 때문에 사유가 전제되지 않고는 私的 自治가 활성화될 수 없고, 사적 자치가 活性化되지 않고서는 시장기구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²⁸⁾

한편 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서는 기업 구조개편을 과감하게 추진하되, 조속한 私有化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기업 형태로 존속²⁹⁾시키면서 기업을 再活性化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28) 이런 의미에서 市場社會主義는 形容矛盾이라고 볼 수 있다. 市場社會主義는 경제에 대한 관료의 통제를 直接統制에서 間接統制로 그 개입형태의 변화만을 의미할 뿐이다. 시장사회주의에 대해서는 O. Lange & F. M. Taylor,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Mi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38)을 참조할 것.

29) 한 산업부문이나 기업을 국유화하는 것은 資本主義 기본이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장자본주의 국가에서 國營化는 동원될 수 있는 통제수단중 가장 극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의 국영화는 다른 경제·사회적 목적추구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하의 국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통일후 일정기간 동안 북한기업을 국영화된 상태로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즉 ①기업운영의 效率과 收益性이 하락하나 존재가치는 인정될 경우, ②기업규모가 너무커서 거의 公共財적 성격을 가지지만, 불완전 경쟁적 시장구조에 의하여 이 특성이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매우 수익적인 産業이어서 국가가 財政調達을 위하여 소유를 원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국영화는 고용·효율 등 경제적 성과를 증진하기 위한 政策手段으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國營企業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경영의 목적 및 방향에 관한 일반적 의사결정은 정부가 하나, 經營自體는 외부의 정치적 간섭 없이 자유기업의 동기와 행위가 전제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國有化는 해당 기업이나 산업의 效率을 증진시키는 점에 한해 그 正當性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C. A. R. Crosland, *The Future of Socialism* (London: Cape, 1956), p. 326.

있다. 그러나 경쟁력을 상실하여 희생불가능한 기업은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의 부채 및 環境汚染 처리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진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아무도 인수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히 倒産시키는 방향으로의 政策設定이 필요하다.

競爭力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투자지원 보다는 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賃金補助金이 갖는 장점은 企業民營化가 이루어지는 동안 기업을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賃金水準이 노동생산성보다 다소 높더라도 기업 경쟁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자본에 대한 투자지원이 資本集約的인 시설투자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으나 賃金補助는 노동집약적인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실업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밖에도 기업의 收益性을 증가시키고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민영화에 따른 企業賣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³⁰⁾

둘째, 北韓地域에 경제행위와 관련된 법질서가 빨리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중의 하나다.

30) 이의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金瑩允, “統獨의 敎訓과 南北韓 勞動市場 統合: 勞動市場統合에 따른 舊東獨지역의 失業問題와 對策을 中心으로,” 韓國勞動經濟學會 1994년 추계세미나 發表論文集 (한국노동경제학회: 1994), pp. 31~52 참조.

市場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생성되는 自生的 질서(spontaneous order)이다. 시장이라는 自生的 질서가 형성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公正한 行爲의 準則(rule of just conduct)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법의 지배가 전제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財産權法制(property law)³¹⁾, 契約法則(contract law)³²⁾, 不法行爲法制(tort law)³³⁾등이 정비되어야 하고, 이 세가지 분야에서 법의 지배가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필요한 최소한의 법제를 정비하고, 법의 지배원리를 확고하게 정립시킨 후 국가는 경제활동에 대한 官僚主義的 개입과 불필요한 규제만을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시장질서를 형성·발전시키기 위해 별도의 계획과 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 법의 지배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제행위의 不確實性이 크게 높아진다. 법의 지배원리, 법치국가원리를 세우는 일이 명령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성

-
- 31) 財産權 法制 즉, 사유의 범위를 명백히 해 두는 것은 소위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영역, 즉 私的自治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 범위내에서는 개인은 최대한의 자유를 가지며 어떠한 국가권력의 임의적 개입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개인은 안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32) 계약법제는 經濟行爲主體間의 자발적인 거래와 자유스러운 교환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法制이다. 계약법제는 불필요하게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하여 교환과 거래에 장애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안된 법제이다.
- 33) 不法行爲法制는 사인간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의도된, 또는 의도되지 않는 가해(각종 사고)에 대해 책임소재 등을 미리 확정해 놓음으로서, 사인간의 경제·사회적 접촉행위, 거래 및 교환 행위를 보다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한 법칙이다.

공적 이행에 불가결한 필요조건이다.³⁴⁾

셋째, 북한 주민의 사고 속에 經濟意識에 대한 改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사회주의적 思考方式과 사회주의적 사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는 經濟體制의 전환이 일어날 수 없다.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의식은 ①勤勞倫理와 經濟意識³⁵⁾, ②국가에 의존했던 사고의 틀에서 자기책임의식, ③創意와 開拓精神, 명령과 지시에만 따르는 수동적, 소극적 자세의 타파, ④공정한 불평등에 대한 시기와 부정적 태도의 배격,³⁶⁾ ⑤遵法意識의 昂揚³⁷⁾ 등이다.³⁸⁾

34) 박세일, 「體制比較의 經濟學」.

35) 행정인·관리인의 자세에서 경제인으로서의 사고와 행동의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경쟁은 곧 악이라는 사회주의 특유의 反競爭的 사고방식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적당히 일하는 노동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사회주의하에선 결과평등을 주장하는 소위 惡平等思想이 풍미하기 쉽다. 절차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게 되면 그 사회의 富와 名譽의 생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자가 가장 불리해지는 잘못된 分配질서가 형성되어 종국적으로 부족의 경제, 과소생산의 경제를 결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惡平等은 개인의 창의, 적극적 정신자세, 근면의 덕 등과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反市場文化를 형성하게 된다.

37) 북한에서는 법이 가치지향적이라기 보다 당과 국가의 意志實現을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의 법에 대한 존경심이 일반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脫法行爲가 보편적이기 쉽다. 또한 부족의 경제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관료적으로 결정됨으로써 부정부패를 비롯한 地下經濟가 일상화된 생활양식의 하나가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에 대한 준법의식의 고취는 남북한 체제단일화를 위한 필수적이며 우선적 과제가 될 것이다.

38) 박세일, 「體制比較의 經濟學」.

나. 南韓政府의 政策的 課題

북한지역의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이 요구된다.

첫째, 改革推進勢力(남한정부)의 올바른 改革理論과 개혁철학 그리고 확고한 지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 명령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經濟的 自由 확장, ②私的所有 영역 확대, ③官僚的 개입과 자의적 규제 축소, ④법의 支配를 전제로 한 소유의 자유,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자본과 노동이동의 자유보장, ⑤價格의 자율화 단행 등이다. 이에 대한 지적신념을 개혁추진 세력들이 확고하게 갖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경제체제 단일화에는 費用과 犧牲이 따른다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이를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체제전환 과정에는 失業과 物價上昇 및 가치관의 혼란 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북한에서는 기존의 價格機構와 상관 없이 특히, 생필품의 가격이 財貨의 稀少성과 관계없이 낮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에 價格自由化는 곧 높은 물가상승을 동반하게 된다. 고용에 있어서도 항상 과잉고용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人力解雇에 따른 失業者가 增加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발생한 失業者는 북한지역으로부터 남한으로 移住할 가능성이

많다.³⁹⁾ 이 경우 실업 노동력을 남한의 사회보장체제로 완전히 흡수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초기 國家財政을 압박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통일후 북한지역에 주거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을 통해 고용보장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되, 자유의사에 의해 남한으로 이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社會惠澤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대신 정부는 실업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就業情報를 제공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제전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企業人이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양성해 내어야 한다. 종래 社會主義에서는 관료(당과 정부)와 노동자라는 두가지 유형의 인간만이 존재해 왔다. 계획하고 관리하고 명령을 내리는 인간과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인간이라는 두가지 유형만이 존재해 왔다. 남북한 체제동질화를 위해서는 기업인이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創造해 내어야 한다. 기업인이 되기 위한 자질은 단순히 經營知識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先進資本主義 제국의 기업인들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의 문

39) 동서독의 통일에 있어서도 임금격차가 구서독으로의 移住를 유발한다고 보다는 구동독지역에서의 失業狀態가 구동독지역 노동자들의 이주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George A. Akerlof & Andrew K. Rose, "East Germany in from the Cold: The Economic Aftermath of Currency Un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 1991, p. 48.

제이다.

넷째, 官僚主義 병폐를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 경제적 法治主義 내지는 법치경제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경제적 법치주의란 경제정책의 수립·집행에 가능한 限, 관료의 자유재량과 자의의 폭을 줄이도록 法治行政을 강화하는 것이며, 경제정책의 내용은 一貫性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료의 규모 즉 공공부문의 크기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사회의 순기능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그 순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체제전환이 기업의 집중현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적 소유의 집중은 경쟁적 시장질서의 장점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적 권력과 結託하는 거대한 政經癒着 현상을 유발하게 한다. 사적 독점은 자유경쟁질서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自由競爭市場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부정책에 의한 시장질서의 왜곡 속에서 形成된다. 다시 말해 정부정책에 의한 여러 형태의 重商主義的 보호와 특혜, 집단주의적 개입이 독과점 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경쟁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섯째, 북한의 경제체제전환과 관련하여 한가지 인식해야 할 사실은 경제체제전환이 다른 사회적인 체제전환과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

비이다. 동서독의 통일에서도 보았듯이, 통독이후 독일이 안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예를 들어 동독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등 국민의식이라든가 외국인에 대한 敵對感情, 지난 40년이상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동독주민의 비타협성과 비적극성 등은 통화통합이나 경제통합과 같은 경제체제적인 전환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전환되는 사회체제의 전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⁴⁰⁾ 다시 말해 구동독의 경제적인 질서는 통화통합을 통해 일시에 전환될 수 있었으나 동독의 사회적인 질서(사회적인 慣習, 體制, 構造 등)는 통합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그대로 존속, 새로운 제도나 이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지난 40년 이상을 견지해 온 사회주의 체제하의 가치판단기준이나 행동양식은 체제가 바뀌어도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經濟活動에 있어 창조적 정신을 즉각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도 비적극적일 것임이 분명하다. 그 밖에 능력과 업적에 따른 상이한 평가 및 補償에 대한 거부감, 사업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불확신, 특히 부채성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따른 위험부

40) Fred Klinger, "Soziale Triebkräfte und Hindernisse des wirtschaftlichen Integrationsprozesses," Forschungsstelle für gesamtwirtschaftliche und soziale Fragen, Gesamtdeutsche Eröffnungsbilanz, Teil II, 16. Symposium der Forschungsstelle (Berlin: 1990), p. 67.

답 및 자신감의 결여 등도 예상외로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행해진 장기간의 교육과 관습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일시에 변화시킬 수 없으며, 점차로 동화되어 가는 형태를 띠 수 밖에 없다. 한 사회질서가 주어진 시간내에 다른 한 질서로 전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상호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나 계층만이 변한다고 해서 사회전체가 동시에 變化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체제전환과 같은 단편적인 변화를 통하여 전체적인 사회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에는 장기간의 과도기가 필요한 것이다. 북한의 경제체제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둔 사회 및 정치교육 등의 대책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第 VI 章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統一韓國 경제체제와 이를 實現시키기 위한 方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앞서 논의한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를 要約·整理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남북한 경제체제의 통합방향과 직결되는 경제체제의 선택은 어느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개별 경제체제가 이루어내는 成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경제체제의 成果基準은 첫째, 제한된 資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生産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選擇에 있어서의 效率性 둘째, 생산된 재화를 어떤 원칙에 따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分配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平等性 셋째, 그 사회가 과거 세대로부터 물려 받은 資源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경제적 成長性 넷째, 위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方法이나 手段的 개념으로서 모든 경제활동이 급격한 변동과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經濟活動의 환경을 마련하는 안정성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체제의 성과기준을 바탕으로 비교한 결과 내릴 수 있는 결론은 ①효율성면에 있어서는 市場經濟가 中央計劃經濟보다의 사결정과정과 資源의 최적배분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分配面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나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막론하고 공정한 분배기준에 의한 正當한 報酬構造가

구축될 때, 개별경제 주체의 능률과 생산성이 촉진되며, 사회 전체적인 성장과 사회 총체적 厚生이 도모될 수 있으며, ③成長面에 있어서는 체제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경제체제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基本目標이나 성장 그 자체가 厚生의 비례적인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④경제적 안정은 사회주의 計劃經濟體制의 주요성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도 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의 간섭이 정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統속에 따라 지향할 체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單一化가 명백한 바, 이의 근본적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限界와 非效率性에 기인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공동체와 같은 작은 사회의 구성원리로서는 성공할 수 있으나 큰 사회의 원리로서는 작동하기 不可能하며, 사회주의 자체가 가지는 설계주의적 사고가 사회의 형성원리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한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체제의 收斂論的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 대상인 統一韓國이 지향할 경제체제의 구체적인 형상은 먼저 그 이념적 가치에서 경제적 自由와 分配的 平等 및 복지경제체제의 구현에 있다. 秩序自由主義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경제적 자유는 生産物과 生産要素市場에서의 자유·공정경쟁과 자원의 희소성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장

가격의 성립과 함께 경제력 集中이 억제되는 데서 찾고 있다. 그 밖에도 민주적 運營方法에 의한 노사관계 형성과 각종 정부규제 축소, 대외시장 개방을 지향하고 있다. 分配的 平等은 누구에게나 능력의 차이, 계급적 신분의 차이 또는 직위와는 상관없이 機會均等이 실현되고 公正賃金과 고용 均등이 부여됨과 아울러 노사간의 공동협의를 통한 産業民主化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경제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경제체제는 의식주가 풍족하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는 바, 이는 生産力 발전에 따른 물질적 생활수준이 향상과 사회적 衡平이 보장된 分配構造, 完全雇用과 사회보장체제의 확립을 통해 이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일한국 경제체제의 기본가치는 경제적 자유와 분배적 평등면에서는 독일의 「社會的 市場經濟」를,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있어서는 일본의 「協議主義的 市場經濟」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상적 기반 위에 통일한국 경제체제의 단일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經濟政策은 市場과 政府, 勞働者와 使用者, 산업발전과 분배, 민족경제와 세계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형성과 못지 않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할 문제는 통일후 북한경제체제를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 사회주의 經濟體制 轉換은 주어진 상황과 현실적 여

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원칙하에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북한 경제전반에 걸쳐 체제전환의 내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市場經濟機能과 가격결정 메카니즘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원리를 확보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 經濟體制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특히 북한 경제체제전환과 관련 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①北韓 경제체제에 충격을 주는 방법을 통해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내에 시장경제체제로 轉換될 수 있도록 조처하며, ②북한 지역이 經濟行爲와 관련된 법의 지배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③북한주민의 사고속에 經濟意識上의 改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경제체제 轉換을 주도하는 남한에서는 ①올바른 經濟改革哲學을 가지고 북한체제전환을 추진하며, ②남북한 경제체제 단일화에는 費用과 犧牲이 따른다는 것을 남북한 주민에게 솔직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③北韓住民을 시장경제 의식을 가진 새로운 인간형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달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남한 경제가 안고있는 문제점부터 解決·改善해, 남한 경제를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에 접근시키는 일부터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한경제는 예를 들어 아직도 큰 규모의 不勞所得이 취득되는 상황에 있다. 즉 토지, 주택 등 자신으로부터 발생하는 資本利得(capital gain)이 전체 국민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이같은 현상은 남한에 經濟正義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남한경제의 생산부문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로소득은 금융실명제를 통한 철저한 종합소득과세를 통해 억제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불로소득과 함께 不正腐敗가 만연되어 있다. 경제사회의 각 계 각층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脫稅와 減稅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정보 획득, 개발권, 인허가 업무, 관급공사 수주 등등에 있어 반대급부를 전제로 한 배타적 이익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공무원의 세금착복은 그 규모와 대상 및 地域에 관계없이 자행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유·공정의 競爭秩序가 형성될 수 없으며, 자유경제질서 의식이 싹틀 수 없다.

1) 1989년 남한의 토지로부터 실현된 자본이득은 전체 국민총생산액의 37.7%였는 바, 이는 87년의 15.6%, 88년 31.9%보다 상승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이 국민총생산의 54.2%(88년), 58.9%(89년)이었음을 감안하면, 불로소득의 규모는 근로소득의 58.9%(88년), 68.3%(89년)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편,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경실련 총서 1 수정증보판 (서울:비봉출판사, 1993), p. 33.

한편, 관주도형 경제개발 초기에 마련되어 驅使되어온 각종 민간경제에 대한 규제가 成長을 제약하는 상황에 봉착하였음을 감안한 정부의 規制緩和는 앞으로도 과감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國際經濟 情報과 상황판단이 어려웠던 개발초기에는 정부의 지도수단이었던 각종 認許可 사항들은 상황이 반전된 현재에는 정부의 活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創業, 生産, 流通 등 모든 경제활동의 원활한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人事, 豫算, 金利 등 모든 업무영역에서 간섭하는 관치금융은 世界化時代를 열어가려는 정부의 의도를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따라서 정부규제는 國民保健, 市場秩序의 확립과 안정, 특수목적상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廢棄·改善·解除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 경실련정책연구위원회 편.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경실련
총서 1 수정 증보판. 서울: 비봉출판사, 1993.
- 郭泰元. 「경제성향과 사회형평」. 서울: 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1.
- 권영성. 「憲法學 原論」. 서울: 法文社, 1988.
- 권혁기·이지평. 「일본형 자본주의: 관민협조의 성공모델」. 서
울: 럭키금성 경제연구소, 1993.
- 金光洙. 「比較經濟體制論」. 서울: 구민사, 1994.
- 金萬斗·韓惠卿. 「現代社會福祉概論」. 서울: 흥익각, 1993.
- 馬場宏二. 鄭道永 譯. 「現代日本資本主義論: 會社主義의 신
화」. 서울: 의암 출판, 1993.
- 民族統一研究院. 「民族共同體 統一方案 理論體系와 實踐方
向」.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44.
- 朴世逸. 「體制比較의 經濟學: Perestroika에 대한 바른 視覺
정립과 第3의 길의 모색을 위하여」. 서울: 국민경제제
도연구원, 1991.
- 朴淳成.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3~1993」. 서울: 北韓研究所, 1994.

- 森嶋通夫. 李基俊역. 「왜 일본은 성공하였는가?」. 서울: 일조각, 1983.
- 안두순 편. 「독일의 경제정책: 강한 정부와 강한 경제간의 조화」.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1994.
- 李相鎬. 「北韓의 經濟管理體制와 經濟制度」. 서울: 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0.
- 이형순. 「경제학원론」. 서울: 박영사, 1980.
- 林陽澤. 「南北韓 産業 및 技術協力の 推進方案에 관한 研究」.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89.
- 통일원. 「'92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2.
- 黃炳惠.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 Crosland, C. A. R. *The Future of Socialism*. London: Cape, 1956.
- Deutsche Bundesbank, *Die Bilanz des Zahlungsverkehrs der Bundesrepublik Monatsbericht*. Frankfurt, 1990.
- Dopfer, K. *Ost-West-Konvergenz. Werden sich die ostlichen und westlichen Wirtschaftsordnungen annähern?* Zürich & St. Gallen, 1970.
- Etzioni, Amitai.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s*. Glencoe: The Free Press, 1961.
- Eucken, W. *Grundsätze der Wirtschaftspolitik*(1952), 6. Aufl. Tübingen, 1990.
- Friedman, M. *Kapitalismus und Freiheit*. Stuttgart Seew-

- ald, 1971.
- Galbraith, J. K. *The New Industrial State*. New York, 1967.
- George A. Akerlof & Andrew K. Rose, "East Germany in from the Cold, The Economic Aftermath of Currency Un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 1991.
- Grossman, G. *Economic Systems*,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4.
- Grossman, G. *Economic Systems*. 김희욱 역, 「비교경제체제론」. 서울: 서문당, 1987.
- Hayek, F. A. ed.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Critical Studies on the Possibilities of Social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35.
- _____. *The Fatal Conceit: The Errors of Socialism*. Routledge, 1990.
- Hedkamp, G. *Probleme beim Übergang von der Planwirtschaft zur Marktwirtschaft aus theoretischer Sicht*. Wissenschaftliches Kolloquium 5~6 (April 1990 München, ifo Institut).
- Hollis, B. Cherney & Moises Syrquin, *Patterns of Development, 1950~197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Lange, O. & F. M. Taylor.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38.
- Leipold, Helmut. *Wirtschafts und Gesellschaftssysteme im Vergleich*. Stuttgart: Gustav Fischer, 1988.
- Lindbeck, Assar.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Left: An Outsider's View*, 2nd ed. New York: Harper and Row, 1977.
- List, Friedrich.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Ökonomie*. Tübingen, 1959.
- Mises, Ludwig V. *Socialism: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1.
- Marx, Karl.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ökonomie*, MEW vol. 23~25. Berlin: Dietz Verlag Berlin, 1963.
- Montias, J. M. *The Structure of Economic System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76.
- Nipperdey, Hans Carl. *Soziale Marktwirtschaft und Grundgesetz*. Köln-Berlin-München-Bonn, 1965.
- Olson, M.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 Pryor, Frederick. *Property and Industrial Organization in*

- Communist and Capitalist Nation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Rostow, W. W. *Stadien wirtschaftlichen Wachstums*. Göttingen, 1967.
- Röpke, W. *Gesellschaftskrisen der Gegenwart*, Erlensbach-Zürich, 1942.
- Schumpeter, J. A. *Kapitalismus, Sozialismus und Demokratie*. Tübingen: Francke Verlag, 1987, Translated from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2.
- Tinbergen, J. *Do Communist and Free Economies Show a Converging Pattern in Soviet Studies*, vol. XII, no. 4 (1963).
- Walter, A. Friedländer and R. Z. Apte,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Engelwood Cliffs.: Prentice-Hall, 1980.
- Walter, S. Buckingham, Jr. *Theoretical Economic System: A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58.
- Wikzynski, T. *The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72.
- Windhoff, B. *Darstellung und Kritik der Konvergenztheorie*.

Bern, Frankfurt /M, 1971.

Zysman, John. *Governemnts, Markets and Growth*.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2. 論 文

金瑩允. “社會主義 體制轉換과 南北韓 統合.” 「통일연구논총」, 제3권 2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_____. “統獨의 敎訓과 南北韓 勞動市場統合: 勞動市場統合에 따른 舊東獨지역의 失業問題와 對策을 中心으로.” (韓國勞動經濟學會 1994년 추계세미나 發表論文集, 1994).

_____. “經濟統合의 事例研究와 南北韓 經濟統合 展望.” 「統一研究論叢」, 제1권 제2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金明基. “南北聯合의 法的 性格.” 明知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論叢」, 제6집.

변형윤. “민족혁명형 개발정책으로의 전환.” 「정경연구」, 1971.

이 근. “통일한국의 새 경제체제.” 통일원. 「참여시장경제」. 서울: 통일원, 1993.

임종철.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와 산업구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許 鎔. “소비자보호운동의 헌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Ballon, R. J. “Der Konzern Japan.” in H. B. Giesler. ed. *Die Wirtschaft Japans. Düsseldorf, Wien*: 1971.
- Edwards, S. “Order of Liberalization of the Balance of Payments: Should the Current Account Be Opened up first?” (The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710, 1985).
- Jens, Uwe. “Schocktherapie oder Gradualismus.” HWWA-Wirtschaftsforschung, *Wirtschaftsdienst* 1993/III. Hamburg, 1993.
- Kornai, J. “The Hungarian Reform Process: Visions, Hopes and Re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86.
- Marx, K. and F. Engel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Ausgewählte Werke*. Moskau: Verlagä progress, 1986.
- Neuberger, Egon.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in Alan A. Brown, et. al. ed. *Perspectives in 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1971.
- Sombart, Werner. “Der morderne Kapitalismus.” in Diehl, K. and Mombert, P. ed. *Ausgewaehlte Lese-stuecke zum Studium der politischen Oekonomie, Kap-*

ital und Kapitalismus. Frankfurt-Berlin-Wien, 1979.

Thalheim, K. C. "Systemtypische Merkmale von Wirtschaftsordnungen." in H. Arndt, *Sozial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Berlin, 1969.

Tinbergen, J. "Konvergenzen und divergenzen zwischen den verschiedenen Wirtschaftsordnunge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Nordrhein-Westfalen ed. *Unsere Wirtschaft-Basis, Dschungel, Dogma?* Köln, 1973.

Wiles, P. J. "Zur Frage der Konvergenz östlicher und westlicher Wirtschaftssysteme." V. E. Schneider ed. *Kieler Vorträge*, NF 55. Kiel: 1968.

3. 其 他

大邱大學校 社會福祉研究所 편. 「社會福祉事典」. 서울: 경진사, 1993.

Betriebswirtschaftlicher Verlag Dr. Th. Gabler, *Gablers Wirtschaftslexikon*. Wiesbaden, 1980.

◎發刊資料目錄 案內◎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93-03 中國의 改革·開放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 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備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備統制條約의 示
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
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6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일의 權力基盤 研究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方向과 南北關係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부의 政勢認識: 對南觀·對外觀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北韓 住民의 價値意識 變化研究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
교연구
- 94-24 韓國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
화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5-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
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 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律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北韓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 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 ~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金正日政權의 變化展望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1994.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4~1995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9)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ECONOMIC PROBLEMS OF NA-
TIONAL UNIFICATION(1993)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研究報告書 94-35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4년 12월 일

發行日 1994년 12월 일
